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政策研究 02-02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서 언

지금 WTO에서는 우리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농업협상이 DD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협상에서 적용될 관세나 보조금의 인하 및 감축방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상당수준의 관세인하 및 보조금감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입장을 잘 반영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NTC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활력(rural viability) 등이 NTC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농업은 공산물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가운데 회원국들은 NTC의 반영 여부에 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NTC를 농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NTC 국가인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모리셔스 등은 WTO 농업협정에서 NTC가 더 이상 선언적인 조항이 아닌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TC와 관련된 조항이 기존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의 틀에 버금가

는 하나의 주요 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NTC와 관련한 WTO 농업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NTC의 개념과 범위, 주요 회원국들의 주장 및 주요 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WTO 농업협정에 NTC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수요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WTO, OECD, FAO 등 관련 국제기구들이 농업의 NTC 또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 관해 내린 정의와 논의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NTC로 제시되고 있는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업경관, 농촌활력(또는 개발) 등에 관해 관련 지표를 설정해 그 변화추이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NTC에 관한 WTO의 논의동향과 쟁점을 제시하고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농업의 NTC를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촌활력측면에서 분석해 사안에 따라 시장접근분야와 국내보조분야(특히 그린박스 조치)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기타 협상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연구회와 분야별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여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과 연구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宋有哲 박사와 朴芝賢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李載玉, 林頌洙 박사가 공동 집필하였으며 丁淳福 주임연구조원이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과 향후 농업협상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2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忠榮

## 국문요약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하는데, 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에서는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혔으며,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체제 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농업협상의 틀 안에서 NTC의 개념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주요 쟁점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WTO 농업협정에 NTC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 NTC의 범위는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업경관, 농촌활력(농촌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이다.

식량안보는 이미 WTO 농업협정에서 NTC의 한 구성요소로서 언급되고 있다.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곡 중심의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주곡에 대한 수매 또는 가격보장이나 목표가격설정 등을 통해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주곡 중심의 식량안보보장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정책 조치 측면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하면 먼저, 식량안보에 가장 직접 연결되는 주곡을 다른 농산물과 구분하고 주곡에 대한 지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유지를 가장 우선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점

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식량에 대한 주권의 확립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안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잠재적인 남북의 식량수요까지 감안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GATT XXI조의 안보예외 조항에 기초해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내 조치는 무역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량안보의 시장접근분야에서 식량안보의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①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지속, ② 주곡에 대한 관세율 설정의 배려 등이다. 우리나라는 농업협정 부속서 5 Section B에 따라 주곡인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UR 이행기간(1995~2004년) 이후에도 이러한 조치가 같은 맥락에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식량수입국이 국내생산의 유지를 통해 식량주권의 보장과 식량안보의 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곡에 대한 관세율의 양허수준은 다른 농산물의 경우와 견주어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틀에서 주곡에 대한 관세율은 국내가격 수준이 세계가격에다 관세율을 부과한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국내보조분야에서 식량안보의 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치는 ① 주곡에 대한 보조조치는 모든 감축대상 보조에서 제외, ② 주곡에 대한 최소허용조치(*de minimis*)의 적용 완화, ③ 그린박스조치 가운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에 대한 규정의 조정 등이다. 주곡에 대한 보조는 생산보조, 투입재 보조, 직접지불 등 그 특성이나 구분과 상관없이 감축대상 보조(AMS)의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조수준이 크다면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조의 상한은 기준연도의 보조금 규모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품목 특정 *de minimis*의 경우 생산액의 10%(개도국 대상)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경우 *de minimis* 수준을 현재 생산액 대비 10%에서

20%로 증가시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그린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조치는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고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가격으로 집행할 경우 세계가격 수준과 그 차이만큼이 AMS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식량안보 목적의 주곡에 대한 재고관리는 관리가격에 기초해 운용하되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재고량은 적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기타 협상전략 및 과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개발 박스는 정책 조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제1대안: 개발 박스에 선진 수입국의 식량안보 사항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제2대안: 선진 수입국의 식량안보 사항이 개발 박스 안에 통합되지 않을 경우, 개발 박스의 허용과 별도로 개도국 이외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사항을 다룰 수 있는 이른바 ‘식량안보 박스(food security box)’의 설정 주장, ▲제3대안: 식량안보 박스는 독립된 국내보조 조치로 분류되거나 그린박스의 연장선에서 수용 등의 세 가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이다.

다른 농업형태와 비교할 때 소규모 가족농(SFF)이 사회에 제공하는 NTC는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소규모 가족농과 연계된 NTC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및 서식지 제공 등 환경 서비스의 창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 ▲전통문화와 가치 계승에 대한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의 한 구성요소로서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가칭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Payments for small family farms)’란

새로운 조항으로 그린박스 조치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 방안이 기존의 그린박스 규정인 제6항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나 제7항 ‘소득 안전망(Income safety net program)’ 등과 차별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의 제시가 필요한데,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치의 수혜 대상 또는 기준은 농가 소득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농가의 소득요인이 소규모 가족농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가족농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실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관련한 사항이 그린박스 제6항 ‘비연계 소득보조’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제안들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차선의 접근방법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고려사항이 개도국 우대조치에 추가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된 문제는 남·북과 수출국·수입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그린박스의 틀보다는 개도국 우대조치 아래 포함하는 것도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농촌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이다.

농촌활력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농촌의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어 농촌활력을 위한 필요조건은 적절한 농업생산과 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활동이나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 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허용보조 조치를 조정함으로써 농촌활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활력(개발)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조치는 허용보조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 창출효과와 소득효과를 위해 농가의 고용임금에 대한 지원(일종의 투입재 보조)은 허용조치로 인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농촌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안전망 조치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발동 기준의 완화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 수준의 증대이다. 전자에서는 평균 농업 조수입이 30% 이상 감소할 때 발동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그 발동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후자에서는 농업 조수입 감소분의 70% 미만 수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현재의 기준을 감소분의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품목을 다각화하지 않아 품목간에 소득의 상쇄효과를 피할 수 없는 농가의 경우 소득 불안정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소득 안전망에 관한 조치 이외에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불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의 소득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활력 문제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의 구분 없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입장이 같은 회원국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치가 채택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차례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17
1. 연구 목적 .....	17
2. 연구 내용 .....	18
제2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	20
1. 배경 .....	20
2. WTO의 접근방식 .....	21
3. OECD의 접근방식 .....	23
4. FAO의 접근방식 .....	29
제3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	32
1. 식량안보 .....	32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	36
3. 농업경관 .....	41
4. 농촌활력(또는 농촌개발) .....	49

<b>제4장 NTC 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b>	53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53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55
가. WTO	55
나. NTC Conference	56
다. 기타 국제기구	59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61
가. 제1단계 농업협상	61
나. 제2단계 농업협상	78
<b>제5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b>	95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95
가. 논리적 배경	95
나.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97
다. 기타 협상전략과 과제	101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103
가. 논리적 배경	103
나.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05
다. 기타 협상전략과 과제	108
3. 농촌활력(농촌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109
가. 논리적 배경	109
나.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110
다. 기타 협상전략과 과제	113
<b>참고문헌</b>	114
<b>Executive Summary</b>	116

## 표 차례

<표 2-1> 농업생산과 결합된 공공재의 구분 .....	27
<표 3-1> 소규모 가족농의 정의 설정을 위한 기준 .....	39
<표 3-2> 경상도별 논 면적 .....	42
<표 3-3> 농가인구의 구성비 .....	50
<표 3-4> 농림업 취업자의 구성비 .....	51
<표 3-5> 농가교역조건 .....	51
<표 3-6> 도·농간 소득격차 .....	52
<표 4-1> 농업협상의 절차 .....	54
<표 4-2> 쟁점별 주요 제안내용 .....	76
<표 5-1> 수입개방 전후의 농가경제 추이 비교 .....	104
<표 5-2>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의 기준 .....	106
<표 5-3> 소규모 가족농을 위한 비연계 소득 보조의 요건 조정 .....	107
<표 5-4> 주요 품목의 평균 소득률: 1997~99년 평균 .....	112

## 그림 차례

<그림 3-1> 우리나라의 곡물재배 면적 지표 .....	35
<그림 3-2>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량 지표 .....	35
<그림 3-3> 우리나라의 곡물 재고율 지표 .....	36
<그림 3-4>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지표 .....	36
<그림 3-5> 미국의 농가구조와 농업 생산액 .....	39
<그림 3-6> 환경친화한 논둑의 길이 .....	43
<그림 3-7> 제주도의 돌담 길이 .....	44
<그림 3-8> 농지의 사용 형태: 확대·축소 지표 .....	45
<그림 3-9> 농지의 사용 형태: 집약화·조방화 지표 .....	46
<그림 3-10> 농지의 사용 형태: 집중화·한계화 지표 .....	47
<그림 3-11> 농지 사용형태의 다각화 지수 .....	48

# 제1장 서론

## 1. 연구 목적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은 교역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농업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을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서문은 NTC로서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UR 농업협상 당시 일부 회원국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이외에도 농촌활력(rural viability)을 NTC의 한 요소로서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의 틀에서 NTC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협정 제20조는 앞으로 WTO 협상이 NTC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 도하(Doha) 각료 선언문에서도 농업협상에서 NTC가 고려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농업은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재 특성을 지닌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한다는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포괄하는 NTC가 WTO체제 아래 추진되는 무역 및 농업정책 개혁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가운데 회원국들은 NTC의 반영 여부에 관해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NTC를 농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만 그린박스의 규정이 NTC 요소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른바 NTC 국가인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모리

서스 등은 WTO 농업협정에서 NTC가 더 이상 선언적인 조항이 아닌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NTC와 관련된 조항이 기존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의 틀에 버금가는 하나의 주요 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케언즈 그룹, ASEAN 등은 기존의 농업협정이 NTC를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NTC 조치의 설정이나 구체적인 반영은 필요하지 않다고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NTC를 명목으로 한 조치들이 일부 회원국에 의해 농업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무역 및 농업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NTC와 관련한 WTO 농업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NTC의 개념과 범위, 주요 회원국들의 주장 및 주요 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WTO 농업협정에 NTC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WTO 농업협상의 틀 안에서 NTC의 개념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주요 쟁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WTO 농업협정에 NTC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데 있다.

## 2. 연구 내용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WTO, OECD, FAO 등 관련 국제기구들이 농업의 NTC 또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 관해 내린 정의와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NTC 범위를 다룬다. 농업의 NTC로 제시한

것은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업경관, 농촌활력(또는 개발) 등이다. 많은 경우 관련 지표를 설정해 그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NTC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과 쟁점을 제시한다. 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은 제1단계와 제2단계의 논의를 거쳐 2002년 12월 현재 협상방식(modality)의 세부원칙에 관한 제3단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환경, 소비자 정보와 표시제, 개발박스 등 다양한 NTC 요소들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었으나 이를 농업협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끝으로 제5장은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농업의 NTC를 식량안보, 소규모 가족농, 농촌활력 측면에서 분석해 사안에 따라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 보조 분야(특히 그린박스 조치)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기타 협상전략도 제시하였다.

## 제2장 농업의 NTC에 관한 개념과 접근방식

### 1. 배경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1994년에 체결된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무역 정책과 국내 정책 사이의 연계를 명시하고 국내보조 조치에 대한 규율과 기준을 채택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 이전까지 무역자유화의 규범은 주로 무역정책에만 초점을 두어 왔지만, 국내 농업정책이 국제 무역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WTO는 국내정책에 대한 규범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와 국내 정책개혁을 통해서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다룰 수 없다는 한계와 농업협정의 이행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국내 관심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 및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규범의 설정 과정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WTO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NTC의 개념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에 국한되었다. 농촌활력(또는 농촌개발)도 NTC의 한 구성요소로 제기됐으나, 최종 농업협정에는 명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많은 회원국은 무역 및 국내 농업정책에 대한 규범이 NTC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새로운 농업협상에서는 NTC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더욱 자세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정치적인 관심을 끌었다. WTO, OECD, FAO 등 국제

기구 차원에서 추진된 NTC에 관한 논의는 NTC의 특성뿐만 아니라 NTC의 타당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조치 및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제 NTC의 범위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과 질, 동물복지, 농촌개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교역재와 비교역재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이를 각각의 산출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다루는 개념이지만 NTC의 구성요소로 접근되고 있다.<sup>1)</sup>

## 2. WTO의 접근방식

NTC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논의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었지만, 그 개념의 근원은 1947년 GATT 협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GATT 제20조(일반적인 예외사항)는 비록 NTC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10개 사항에 대해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사항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공공의 도덕적인 사항, 동식물과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특허와 상표 및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조치와 아름답거나 역사성이 있고 또는 인류학적인 가치가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 등이 해당된다.<sup>2)</sup>

- 
- 1)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넓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NTC의 틀 안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relating to the importations or exportations of gold or silver; (d)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 relating to customs enforcement, the enforcement of monopolies ... the protection of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 and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e)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ur; (f)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WTO 농업협정에서 NTC를 언급하거나 그 개념을 반영한 조항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정의 전문(Preamble)이다. 전문은 ‘개혁 프로그램 아래 약속이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의 필요를 포함한 NTC를 감안하여 모든 회원국에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sup>

둘째, 농업협정 제20조이다. 이 조항은 농정개혁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NTC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농업협정 전문과 달리 NTC에 대한 정의나 개념의 제시는 없다.

셋째, 농업협정 제4조 2항과 부속서 5이다. 이 조항은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등 NTC 요소들을 반영한 ‘특별조치(special treatment)’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 유예와 최소시장접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곧 우리나라의 쌀은 농업협정이 인정하는 NTC 요소인 식량안보의 명목으로 특별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h) undertaken in pursuance of obligations under any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 (i) involving restrictions on exports of domestic materials necessary to ensure essential quantities of such materials to a domestic processing industry...; (j)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e\\_/gatt47\\_e.pdf](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e_/gatt47_e.pdf))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ting that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 should be made in an equitable way among all Members, having regard to non-trade concern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pdf](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pdf))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negotiations for continuing the process will be ... taking into account: ... (c) non-trade concerns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pdf](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pdf))

5) 특히 부속서 5는 특별조치 대상 품목에 관한 몇 가지 이행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건들은 특별조치 대상 품목이 기준연도(1986~88년)에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으로 수입된 경우, 수출보조 대상이 아닌 품목, 효과적인 생산 제한 조

끝으로, 기타 조항들이다. 농업협정 제16조는 최빈국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대해 국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탄력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2조에서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는 NTC 요소들을 반영한 조치들과 무역효과가 적거나 없는 조치에 대한 적절한 자제(dues restraint)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은 기술규정이 ‘적법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목적’으로 국가안보 보장, 속이는 행위 방지, 사람과 동식물의 건강이나 안전보호, 환경보호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WTO체제 아래 NTC 개념이 좁게는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와 환경보호로 정의되고 있지만, 넓게는 개도국 우대 조치, 시장접근에 관한 특별 조치, 그린박스 조치, TBT 협정하의 적법한 목적 등 다양한 국내 조치와 목표로 확대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WTO 농업협상과정에서 NTC로서 추가로 제안된 요소도 많은데 예를 들면, 식품안전, 농촌활력(또는 농촌개발), 소비자 정보와 표시제, 동물복지, 개발박스 등이다. 그 밖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NTC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 3. OECD의 접근방식

OECD는 WTO 농업협정이 사용하는 NTC에 대해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란 개념 아래 논의를 전개해

---

치가 적용되는 것,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기준기간의 4%까지 정해질 것 등이다.([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pdf](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4-ag.pdf))

오고 있다(OECD 2001). 이러한 논의의 주된 계기는 1998년 3월에 OECD 농업 각료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Communiqué)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게 된 것에 있다.<sup>6)</sup> 각료 발표문이 명시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은 경관 조성, 토지보전과 재생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 이익, 농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에 대한 기여 등이다.

지금까지 OECD의 논의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논의돼 왔다. OECD는 농업의 비상품 산출(non-commodity outputs of agricultur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과 비식품(food & non-food outputs)으로 분류할 경우 화훼, 섬유(fibres), 재생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 또는 원료 농산물은 비식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및 비시장 상품(market & non-market goods)으로 분류할 경우 비시장 상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개념은 그 목적이 비시장 상품의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당하기 때문에 상품 및 비상품 산출(commodity and non-commodity output)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의 비상품 산출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농촌고용에의 기여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다원적 기능은 농업활동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생산과정과 그 다수의 산출물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인용되는 사항은 농촌경관, 문화유산, 환경재(생물다양성, 토지보전 등), 농촌활력, 식량안보, 동물복지 등이다. 그러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세 가지의 서로 상이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귀

6) Ministerial Communiqué: beyond its primary function of supplying food and fibre, agricultural activity can also shape the landscape, provide environmental benefits such as land conservati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renewable natural resources and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contribute to the socio-economic viability of many rural areas.

결되고 있다. 즉, 농업에 의한 여러 가지 재화의 생산간에는 관계가 있으며 다양한 재화의 외부성(externality) 및 공공재의 특성이 있다는 점, 이러한 비상품 산출의 수요의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이며 경험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국내정책을 입안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원적 기능의 정책개혁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함의를 포함한 이의 정책적 측면의 필요 등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OECD에서는 농업의 다양한 비상품 산출의 생산, 외부효과 및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생산측면과 외부효과 및 공공재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다.

첫째, 생산 측면에서는 농업에 의해 결합 생산되는 다수의 상품과 비상품 산출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생산 활동은 상품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또는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비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상품과 비상품의 결합성은 농업에 의한 상품 생산의 변화가 이와 결합돼 생산되는 비상품의 생산 수준도 변화시킨다는 점과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sup>7)</sup> 농업에 의한 상품과 비상품 사이의 결합관계에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이 결합관계가 공간과 규모 및 시간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sup>8)</sup>

둘째, 외부효과 및 공공재 측면에서 농업생산과 결합된 비상품은 많은 경우에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7)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는 생산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산출물을 결합해 제공하는 것이 이들을 따로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싼 경우를 말한다.

8) 공간 측면에서 비상품의 제공 비용과 품질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생산성과 규모의 차이, 비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동 등에 의한 것이다. 시간 측면은 비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 생산과정에서 비상품의 개발패턴, 영농방식과 체제가 조정되는 속도, 비상품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 등을 말한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효과나 공공재 측면의 특성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 중심의 조치나 정책 조치의 도입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곧 외부효과를 나타내거나 공공재 특성을 지닌 비상품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조치나 정책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업생산과정에서 상품과 결합돼 제공되는 비상품이나 서비스는 공공재의 특성 기준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다(표 2-1 참조).

또한 OECD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다원적 기능간의 구분도 시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인적자원, 자연자원 또는 인간이 창출해 낸 자원을 다음 세대가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자원 지향적(resource-oriented)이며 장기적이고 범세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원적 기능은 다양한 산출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활동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여러 목표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원적 기능은 행동 지향적(activity-oriented)인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만 고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OECD는 제시하고 있다. 즉, 서로 관계 있는 다수의 산출(output)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농업과 비농업활동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경우 비농업활동도 비배제적(non-excludable)이고 비경쟁적(non-rival)인 공공재의 부수적인 이익(side-benefits)을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만 고유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업, 어업, 개별가구에 의한 생산(household production)도 낮은(또는 비싼) 비용에 의해 높은(또는 낮은) 품질의 산출을 가져올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 근간에 있다는 것이다.

〈표 2-1〉 농업생산과 결합된 공공재의 구분

	경합하지 않는 경우 (non-rival)	혼잡한 경우 (congestible)	경합하는 경우 (rival)
배제할 수 없는 경우 (non-excludable)	순수 공공재 · 경관(NUV) <sup>1)</sup> · 자연서식지(NUV) · 생물다양성(NUV)	접근할 수 있는 자원 (open access resource) · 식량안보 · 경관(방문자에 의한 UV)	접근할 수 있는 자원
혜택이 적은 지역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경우	지역 순수 공공재 · 홍수 조절 · 토양 보전 · 사태 방지 · 경관(거주자에 의한 UV) · 문화유산(지역 특정한 NUV) · 농촌공용과 연계된 양(+의 효과)	-	-
지역사회의 외부인만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자산 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s) · 지하수 충전 · 자연서식지(UV) <sup>2)</sup> · 생물다양성(UV)	공공자산 자원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자연 서식지(NUV) 생물다양성(NUV)	클럽재(club goods) <sup>3)</sup> · 식량안보(특별한 조건이 이루어진 경우) · 자연서식지(특정 조건 아래 NUV) · 생물다양성(특정 조건 아래 NUV)	민간재(private goods) · 경관(배제할 수 있다면 방문자에 의한 UV) · 문화유산(역사적으로 이름난 건물의 UV) · 식량안보(농가에 의한 UV)

주: 1) NUV는 비사용가치(non-use value)를 나타내며, 자원의 존재에 대해 사람이 부여하는 존재가치(existence value)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부여하는 상속가치(bequest value)로 구성된다.

2) UV는 사용가치(use value)를 나타내며 실제 사용과 연계된 가치를 말한다.

3) 클럽재는 사유재와 공공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재화나 기능을 말한다.

자료: OECD(2001)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OECD는 다원적 기능에 대해 고정된 개념에 대한 정의보다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 차원에서 이 용어의 개념(working

definition)을 제시하고 있다. 곧 OECD의 정의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활동이 다수의 산출물(상품과 비상품)을 생산함으로써 한번에 사회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원적 기능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서 농업에 의해 동시에 생산되는 복수의 상품 및 비상품 산출의 존재<sup>9)</sup>와 이에 있어서의 일부 비상품 산출이 외부성이나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sup>10)</sup>을 들고 있다.

그러나 농촌고용(rural employment)과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음도 OECD는 인정하고 있다. 즉 농촌고용은 투입재(input)이며 비상품 산출로 간주될 수 없지만 외부성으로 볼 수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의 주된 이슈는 국내 생산과 이에 반대되는 다른 공급원과의 연계이며 다원적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견해와 이는 농업의 중요한 다른 기능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원적 기능을 특성(characteristics 또는 positive concepts)이라기보다는 목적(objective 또는 normative concepts)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다원적 기능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품 및 비상품 산출의 생산에 있어서의 결합성(jointness)의 성격과 정도이다. 결합 생산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생산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산출의 공급 증가나 감소가 다른 산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합성의 이유에는 생산과정의 기술적 상호의존성(technical interdependenc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할당 불가능한 투입재(non-allocable inputs) 또는 할당 가능하지만 농장수준에서 고정된 투입재(allocable inputs that are fixed at the firm level)를 들 수 있다.

---

9) the existence of multiple commodity and non-commodity outputs that are jointly produced by agriculture

10) the fact that some of the non-commodity outputs exhibit the characteristics of externalities or public goods

기술적 상호의존도는 특정 작물재배방식에 의한 해충의 구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과 토양침식, 화학물질의 잔류, 온실가스 배출 등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고용과 식량안보는 위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적절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만일 생산이 비결합적(non-joint)이라면 농업의 비상품 산출은 독립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상품 산출이 다른 비농업 제공자(non-agricultural providers)에 의해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는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결합성의 성격은 상품과 비상품 산출이 고정된 비율로 생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상대가격과 정책인센티브에 의해 변화하며, 비상품 산출은 농업활동이나 자원의 사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생산(commodity production)과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무역효과를 갖고 있어 다른 나라의 복지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도 갖고 있다.

또한 비상품 산출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 질도 국가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정성이나 지역별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비상품 산출은 비농업에 의해서도 공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상품 산출의 공급이 농업생산과 분리될 수 있는가와 농업에 의해 공급되는 비상품 산출의 어느 정도까지 비농업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내 및 국제경제에 최소한의 자원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비상품 산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FAO의 접근방식

FAO 차원에서 NTC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제한된 편이

다. FAO는 1999년에 ‘농업과 토지의 다원적인 특성(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 MFCAL)’이란 개념을 토대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FAO 1999).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OECD 차원에서 논의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동일한 성격은 아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FAO와 네덜란드는 지형적인 위치와 농업·생태 구역, 추진력, 농업체제 형태, 규모, 관측 및 영향의 지속가능성, 사례의 재현 가능성, 사례로부터의 교훈, 연락처, 추가 정보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기초해 구성된 130개 사례연구의 ‘다원적 사례연구(Multifunctional Case Studies: MC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FAO와 네덜란드는 농가, 민간부문, 대학교, NGO, 정부, 국제기구 등 80개국 1,300명이 참가한 전자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과 농가 수준의 사례를 수집하고 정보를 나누기도 하였다. FAO는 UN 지속가능위원회(CSD)의 국가보고서들을 평가하고 설문조사, 지역연구, 문헌검토 등을 통해 지역 수준의 정보를 얻어 이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FAO가 채택한 MFCAL 접근방식은 농업 및 토지사용과 관련된 모든 환경·경제·사회 기능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FCAL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의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다. SARD는 토지, 수자원, 동식물의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표를 둔 접근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MFCAL에 기초한 접근방식은 SAR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중심의 분석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MFCAL의 기본 가정은 농업체제가 본질적으로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며, 식량과 섬유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된 목표 이상의 기능을 항상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FAO의 MFCAL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력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을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
- ② 농업과 토지사용에 관한 관심사항을 집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유용한 수단은 농민단체, 지역단체, NGO, 민간 및 정부부문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기관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다.
- ③ 적절한 국가의 정책 환경이 필요하지만, 사회, 경제적 틀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 ④ 개인부터 국제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보 교류는 혁신에 대한 참여와 그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 ⑤ 농업과 천연자원에 대한 응용연구 및 지역적으로 관련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 ⑥ 지역 금융기관, 농업의 폭넓은 기능을 가치매김할 수 있는 수단,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와 전망 등 경제적인 수단을 발전시켜야 한다.

끝으로 FAO는 농업과 토지 사용의 다양한 잠재 기능들을 개발하고 이 기능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효과나 상쇄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제3장 우리나라의 NTC 범위

### 1. 식량안보

식량안보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이다(FAO 1996).<sup>11)</sup> 186개국이 참여하여 1996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5년까지 영양부족에 처한 인구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또한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요소 측면에서 식량의 유용함(availability), 식량에 대한 접근(access), 식량의 활용 가능성(utilization)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Chung et al. 1997).

UN 일반 이사회는 식량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에 속한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기초로 식량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식량안보의 원칙(principles of food security)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olagral 2001). 식량안보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정 수단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통한 적절한 국경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③ 사회 및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무역 곧 식량 덩핑(dumping)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④ 국제 가격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야

---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od security, at the individual, household,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is achieved]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o meet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한다.

- ⑤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이 촉진되어야 한다.
- ⑥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⑦ 유전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제기된 식량안보의 원칙들은 그 타당성에 대해 찬반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식량 수입국의 처지에서 판단하면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지금의 WTO 규범과 견주어 보면 식량안보의 확보 측면에서 WTO 규범이 취약하다는 점과 더 나아가 둘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WTO는 농정 수단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가족농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최종제품이 아닌 생산이나 공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제품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도 지적재산권의 설정에 의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수준에서 접근되기도 한다. 실제로 WTO 농업협상과정에서 쿠바를 비롯한 11개 개도국은 식량안보에 관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WTO 무역규정에서 예외조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sup>12)</sup> 식량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든 식량안보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식량안보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형이나 기후조건 등에 알맞아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논 농업은 주곡인 쌀을 생산함으로써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최소한 주곡과 연계한 식량안보의 개념은 안전하

12) 농업협정에 제출한 협상 제안서로 문서 번호는 <G/AG/NG/W/13>이다.

고 품질 좋은 쌀을 적절한 가격으로 안정되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쌀은 국내생산을 통한 국내 수요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곧 국내 자급률이 100%인 거의 유일한 곡물이다. 또한 토지 이용 측면에서 논은 경지 면적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핵심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농업 생산액과 소득 측면에서 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쌀은 농업의 근간이고 주된 소득원이다.

곡물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식량안보의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0년 이후 곡물의 공급과 관련한 장기적인 추이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3)14)</sup> 이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곡물의 재배면적 지표이다(그림 3-1). 전체 및 1인당 곡물 재배면적은 1970년 이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정체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곡물 생산량 지표이다(그림 3-2). 전체 및 1인당 곡물 생산량은 197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체 내지 약간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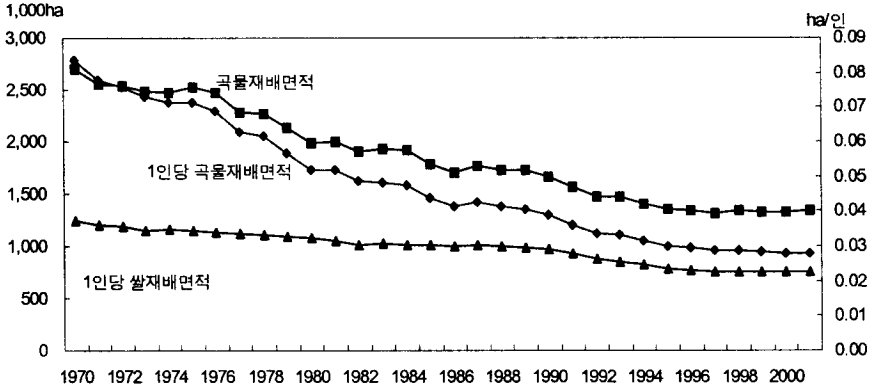
셋째, 곡물의 재고율 지표이다(그림 3-3). 곡물과 쌀의 재고량과 재고율은 1996년 이후 개선되어 쌀의 경우 2001년 현재 FAO 권장 수준인 17~1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끝으로, 곡물의 자급률 지표이다(그림 3-4). 쌀의 자급률은 1995~2001년에 단순 평균으로 99%를 기록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전체 곡물에 대한 자급률은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2001년 현재 31%를 기록하고 있다.

13) 곡물을 식량안보의 척도로 삼는 이유는 첫째, 곡물이 사람이 섭취하는 식량 에너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둘째,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좋아 안정된 식량 공급원이기 때문이다(Brown and Kane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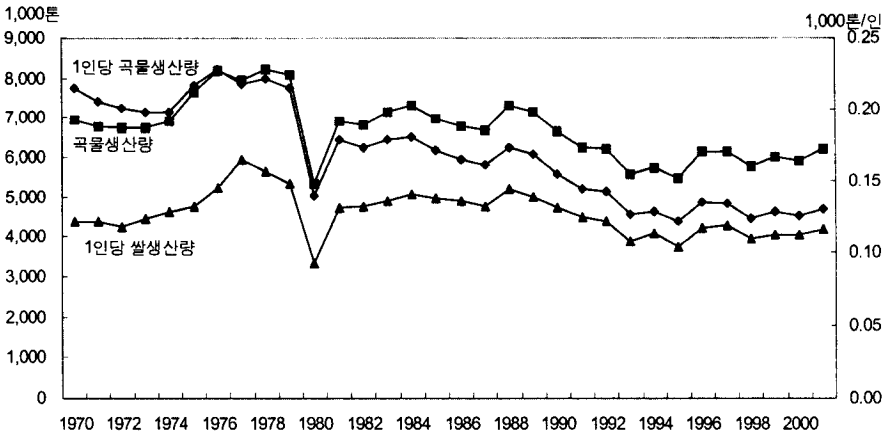
14)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관한 지표 설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임송수(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3-1> 우리나라의 곡물재배 면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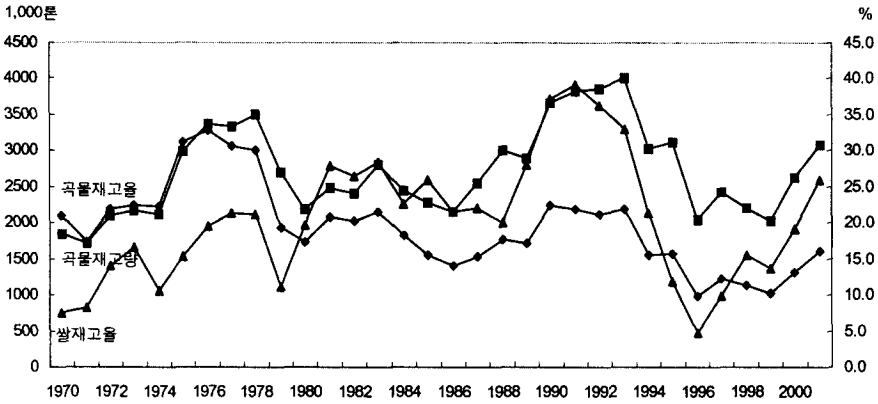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에서 산출함.

<그림 3-2> 우리나라의 곡물 생산량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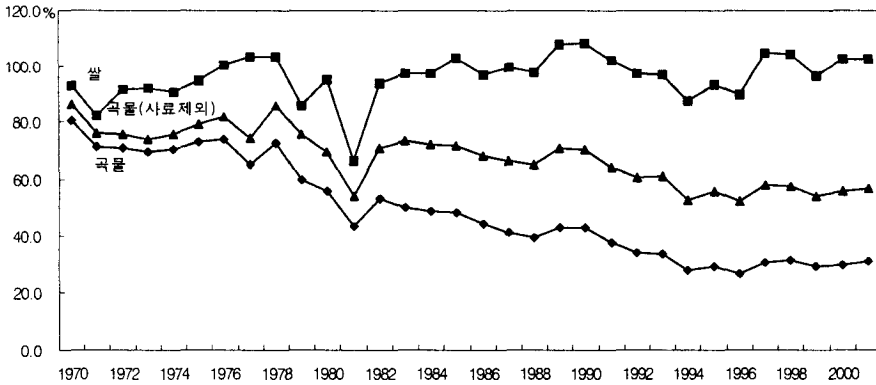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에서 산출함.

<그림 3-3> 우리나라의 곡물 재고율 지표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에서 산출함.

<그림 3-4>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 지표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연도에서 산출함.

## 2.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우리나라에서 ‘가족농’이란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 단위인 ‘농가’가 경영형태론 측면의 ‘가족농’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정호 1993).

농가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인 것과 통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법률적인 의미는 가족과 농업생산 단위로서 농업이 주업인 가구단위를 말한다. 통계적인 의미는 농업 경영자와 종사자의 가구 단위를 독립적인 농업경영의 단위로 접근한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족농’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된 상태이다(Richardson 2000). 이 가운데 Knutson, Penn and Flinchbaugh(1997)는 가족농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5)</sup>

- ① 대부분의 영농관리와 작업이 경영주와 그 가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가구와 사업 사이에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 ③ 경영주에 의해 관리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가구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가족농에 대한 다양한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을 모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① 크고 가족이 없는 기업을 뺀 모든 농가이다.
- ② 고용된 관리인이나 가족 중심이 아닌 기업농 또는 조합이 없는 농가이다.
- ③ 연간 고용 노동력을 1.5명 미만으로 사용하고 고용된 관리자가 없는 농가이다.

15) 이 기준에 따르면 <그림 3-5>에서 ‘대규모 가족농(large family farm)’과 ‘초대형 가족농(very large family farm)’만이 가족농에 포함되게 되는데, 1998년 현재 이들이 미국의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이고 농업 생산액의 53.1%를 차지한다.

16) <http://www.ers.usda.gov/briefing/FarmStructure/familyfa.htm>

- ④ 연간 고용 노동력이 3.0명 미만이고 가족의 전체 노동력의 최소 50% 이상을 공급하는 농가이다.
- ⑤ 가족 노동력이 1.5~2.0명 미만이고 이와 같은 수준의 고용 노동력이 있고,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고, 스스로 경영하며, 임차지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농가이다.
- ⑥ 농업생산이 경영주의 주된 직업이거나 가계소득의 주요 소득원인 농가로 경영주, 가족원, 또는 고용 노동력으로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노동시간을 제공하고 3개 이상의 가족단위에 의해 경영되지 않은 농가이다.

최근에 미국 농무부(USDA)는 <그림 3-5>와 같이 연간 판매액이 25만 달러 미만을 ‘소규모 가족농(Small Family Farm; SFF)’, 판매액이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미만 사이의 농가를 ‘대규모 가족농’, 판매액이 50만 달러 이상의 농가를 ‘초대형 가족농’으로 분류해 제시하였다.<sup>17)</sup>

우리나라는 농가 구조에 대해 규모 계층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영규모 측면에서 소규모 가족농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농가는 경영 규모의 계층에 따라 ‘소농·중농·대농’으로 나누기도 했으며, 경영 규모가 아주 작은 농가는 ‘영세농’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소농’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규모의 기준으로 0.5ha 또는 1.0ha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경영규모 측면의 일반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소규모 가족농에 관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농가는 경영형태론 측면에서 ‘가족농’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 소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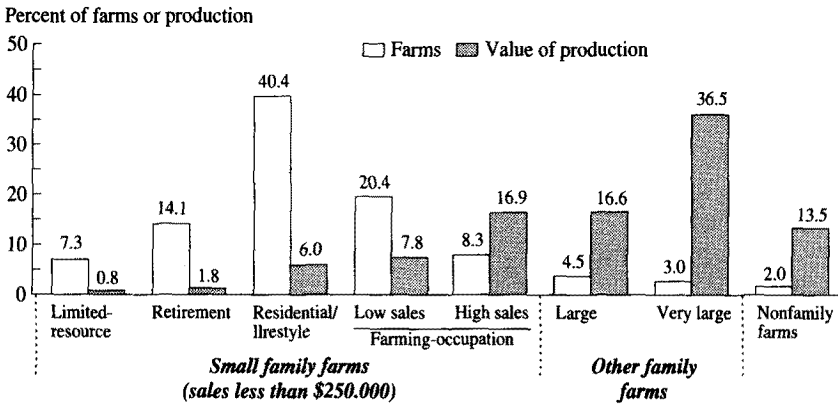
17)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르면 <그림 3-5>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가족농의 비중은 98%에 이른다. 따라서 거의 모든 미국 농가가 결국 가족농이란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거의 모두 가족농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농의 개념은 경영규모 측면의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5> 미국의 농가구조와 농업 생산액

**Share of farms and value of production by farm typology group, 1998**

Large and very large family farms account for 53 percent of the value of production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1998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tudy, Version 1.

경영규모 측면에서 다시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과 소득을 가족농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표 3-1>.

<표 3-1> 소규모 가족농의 정의 설정을 위한 기준

세부 기준	<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
1. 경영규모가 전체 평균보다 낮음.	○	○	△		
2. {(농업소득/농가소득)*100}이 50% 이하	○	○	△		
3.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계소득)*100}이 100% 이하	○	○	○	△	

주: SFF에 해당되는 범위에는 ○로 표기하고 일부 해당되는 범위엔 △로 표기했다.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첫째, 특정 농가의 경지면적이 우리나라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면 이 농가는 소규모 가족농에 포함될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39ha이기 때문에 1.0~2.0ha의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특정 농가의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이면 이 농가는 소규모 가족농에 포함될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경지면적이 1.0~2.0ha인 농가 계층의 농업소득 비중( $\{농업소득/농가소득\} \times 100$ )은 57%로 산출되었고 이 이하의 규모 계층의 비중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소득 비중이 50% 이하인 농가당 경영규모 계층은 1.0~2.0ha에 해당된다.

끝으로, 특정 농가의 소득이 평균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농가는 SFFF에 포함될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2.0~3.0ha 계층의 상대적인 농가소득의 비중(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계소득\} \times 100$ )은 111%로 산출되었고 이 이하의 규모 계층의 비중은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인 농가소득의 비중이 100% 미만인 농가규모는 2.0~3.0ha 범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세부 기준을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소규모 가족농의 경영규모는 1.0~1.5ha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제안된 세부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에 국한해 SFFF로 정의하는 이유는 농지와 연계된 농가의 원래의 개념을 반영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적더라도 농가소득 또는 농업소득이 높은 농업(예: 온실)을 감안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규모 가족농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① 소규모 가족농의 경영규모를 1.0ha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총 농가수 135만 호 중에서 소규모 가족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산출된다.
- ② SFFF의 경영규모를 1.5ha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때 소규모 가족농이 총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나타난다.

### 3. 농업경관

일반적으로 경관(landscape)은 ‘자연과 인공 풍경을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임승빈 1991). 여기에서 자연 풍경은 지표의 물리적인 특성(토지 고도 및 경사도, 암석 형태, 호수, 강, 해변), 자연적인 초목, 기후 등의 요소로 구성되는 반면에 인공 풍경은 경작지의 공간적인 분포, 농가 건물, 계단식 논과 경사지, 돌과 나무집, 울타리와 담, 연못과 산림농장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경관은 야생상태, 역사적인 유적지, 문화유산 요소 등 비농업적인 특성과 종종 산재해 있다.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경관은 면적과 선 그리고 점적 특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요소의 색깔 구성도 전체 풍경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01). 경관의 시각적인 특성은 길, 등산로, 소풍장소, 지역 동식물 및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시설의 확충과 연계돼 있는데, 이로써 잠재적인 이용자에 의한 경관의 어메니티(amenity)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업과 결합된 또는 농업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경관은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농업경관은 생물다양성, 문화 및 역사적인 요소, 어메니티와 미적 및 생산적 요소, 오락과 접근, 과학 및 교육 측면의 관심사항 등의 가치와 연계돼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농업 경관과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는 정책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농업경관에 대한 개념이나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정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농업경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 조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과 결합된 경관의 구성요소들을 밝히고 그 관계를 규명하며 사회 최적 수준의 경관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 조치를 시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 특유의 농업경관 요소들을 밝히고 그 능동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토지 사용과 연계된 구성요소 측면의 접근방식에 기초해 농업경관 지표를 설정하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임송수 2002).

첫째, 계단식 논 면적이다. 계단식 논은 독특한 경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와 전통을 나타낸다. 계곡이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양 침식, 산사태, 홍수 등을 방지하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나타낸다.

계단식 논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 없으며 또한 그 면적에 대한 일관된 자료가 제시되거나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편의상 7% 이상의 경사를 지닌 논을 계단식 논으로 정의하면 1992년 현재 계단식 논 면적은 약 26만 ha(전체 논 면적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2).<sup>18)</sup>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 비용과 노동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계단식 논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 경사도별 논 면적

	0~2%	2~7%	7~15%	15~30%	30~60%	60~100%	전체
논 면적(ha)	550,332	477,677	215,479	44,761	34	1	1,288,249
비중(%)	43	37	17	3	0	0	100

자료: 농촌진흥청(1992)

둘째, 환경에 친화한 영농방식(무농약 및 유기농업)을 채택한 논 면적이이다. 논둑은 토양 침식을 막고 홍수를 조절하며 수자원을 함양하고 그 경치는 유럽식 농업의 생울타리와 견줄 수 있다.<sup>19)</sup> 또한 논둑은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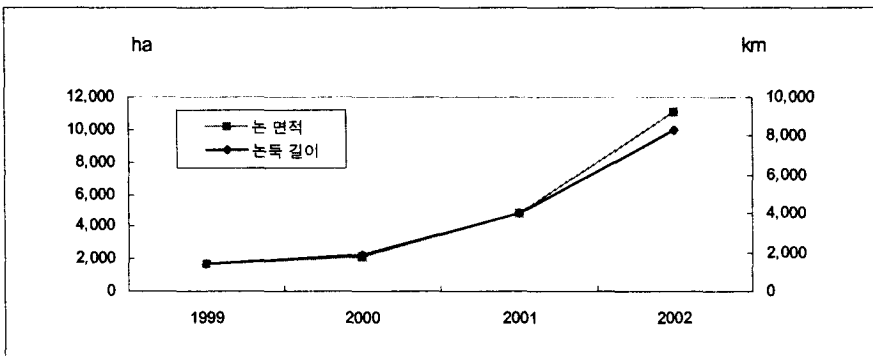
18) 농촌진흥청(1992)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토양 경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자료는 그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19) 밭 중심의 유럽 농업에서 생울타리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경관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농촌의 삶을 연상시키게 하는 한 요소이다.<sup>20)</sup>

논둑의 길이는 논 면적과 필지 수를 기초로 김선관(2002)에서 제시된 수식을 활용해 산출했다(그림 3-6).

<그림 3-6> 환경 친화한 논둑의 길이



자료: 농림부([www.maf.go.kr](http://www.maf.go.kr))와 토지정보센터([lic.mogaha.go.kr](http://lic.mogaha.go.kr))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환경에 친화한 논둑의 길이는 1999년에 1,417km에서 2002년에 8,280km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에 친화한 영농방식을 채택한 논 비중이 같은 기간에 0.16%에서 1.03%로 늘어난 결과이다. 앞으로도 환경에 친화한 영농방식을 채택한 논 면적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논둑의 길이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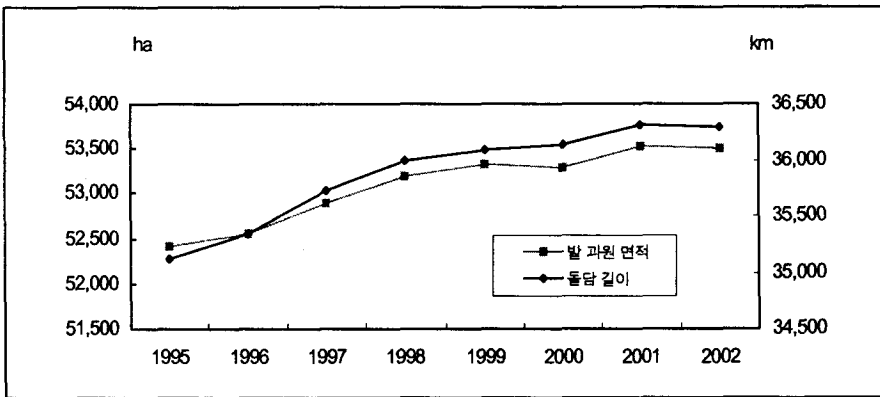
셋째, 제주도 지역의 밭과 과원을 둘러싼 돌담의 길이이다. 제주도의 돌담은 독특한 농업경관을 제공한다. 돌담은 동물의 침입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토양 침식과 풍식을 방지하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

20) 인터넷에서 '논둑' 용어로 찾기를 시행해서 얻은 약 700개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논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은 개구리, 콩, 반딧불이, 다양한 잡초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sup>21)</sup>

논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밭과 과원 면적 및 그 필지수를 바탕으로 돌담의 길이를 산출했다(그림 3-7).

<그림 3-7> 제주도의 돌담 길이



자료: 농림부(www.maf.go.kr)와 토지정보센터(lic.mogaha.go.kr)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1995-2002년에 제주도의 돌담의 길이는 35,116km에서 36,293km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에 밭 면적은 5% 감소하였지만, 감귤 재배면적이 18%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과잉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감귤의 재배면적의 추가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담의 길이도 정체 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sup>22)</sup>

넷째, 농지의 사용 형태이다. 농지의 사용 형태는 농업경관의 전체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OECD 2001a). 경관의 구성요소로서 농지와 그 구성요소의 변화는 다른 경관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집약적인

21) 돌담과 연계한 생태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2) 돌담은 농업생산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돌담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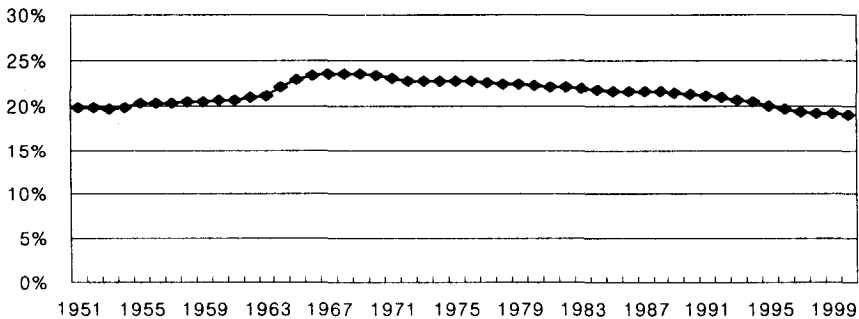
영농방식의 채택은 투입재의 과다 사용과 작물의 균질화(homogenization)로 생물 다양성이나 서식지 측면에서 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농지의 사용 형태에 관한 지표는 다시 다음과 같은 세부 지표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 ① 확대·축소 지표

이 지표는 경지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그림 3-8). 1960년대 말 이후 경지면적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1968년에 최대 24%에서 2000년에 19%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1999~2000년에 각각 13,000ha의 경지가 비농업용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지표 추이는 농업경관의 물리적인 스톡이 감소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3-8〉 농지의 사용 형태: 확대·축소 지표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 ② 집약화·조방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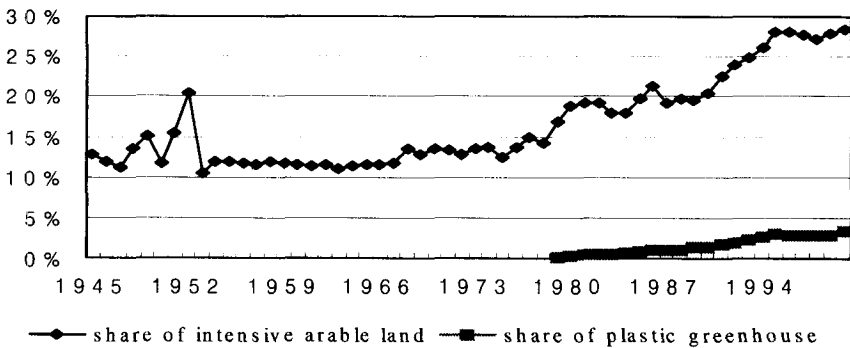
이 지표는 전체 경지면적에서 집약적으로 투입재를 사용하는 경지면적의 비중으로 산출된다(그림 3-9). 편의상 투입재는 화학 비료에 한정했으며 그 집약적인 사용은 질소(N)·인(P)·칼륨(K)의 성분량 기준으로 10아

르당 각각 10kg 이상을 시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9개의 작목 그룹 가운데 4개(잡곡, 온실 작물, 채소류, 과실류)가 집약적인 투입재 사용 작물로 구분된다. 1970년대 초반 이후에 집약적인 농지 사용 형태를 나타내는 농지의 비중은 최소 13%에서 2000년에 28%까지 증가하였다. 과실류와 채소류 및 온실 재배면적의 증가, 경영규모의 확대 등은 더욱 집약적인 관리방식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세부지표는 온실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별히 온실면적을 고려한 것은 온실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농업 경관에 음(-)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세부지표도 1979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면서 0.2%에서 3.3%까지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상과 같은 지표로 얻을 수 있는 집약화 추이는 농업경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농지의 사용 형태: 집약화·조방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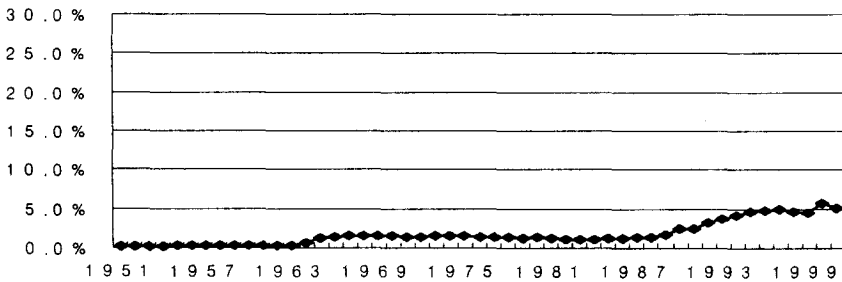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 ③ 집중화·한계화 지표

이 지표는 전체 농가에서 대규모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그림 3-10). 대규모 농가는 편의상 3ha 이상의 경지면적을 경영하는 농가로 가

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농가의 비중은 차츰 증가해 2000년 현재 5%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된다. 농가 경영규모의 꾸준한 상승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화와 분업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지 사용 측면에서 집중화는 경관의 구조의 동질화를 초래함으로써 경관의 질에 음(-)의 영향을 가져온다. 또한 집약적인 경영방식과 연계된 집중화는 환경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3-10> 농지의 사용 형태: 집중화·한계화 지표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 ④ 다각화 지표

농지의 다각화 지표는 다양한 형태의 농지 사용이 농업경관의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설정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농지 사용과 작물 재배는 농업경관 요소들의 복잡성, 이질성, 계절성 등을 높이게 되고 이로써 서식지의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게 된다. 계절별 또는 작물별 다각화는 시각적인 경관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다각화가 자동으로 또는 언제나 더 나은 경관 요소를 창출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조화된 다각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초원은 비록 균질화된 경관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구릉지에서 탁 트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한다.

농지의 사용형태 측면에서 다각화를 계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수를 활용하였다(Tauer and Seleka 1994).

$$I_{\phi} = (\sum S_i^{\phi})^{\frac{1}{1-\p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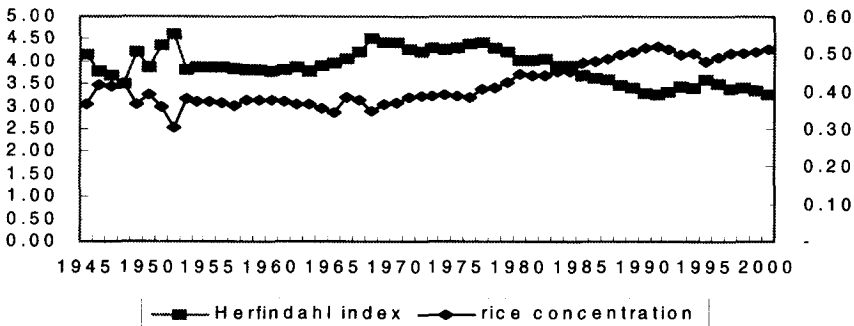
위 식에서  $i$ 는 대상을 나타내며  $i = 1 \dots n$  이고,  $S_i$ 는  $i$ 의 비중을 나타낸다.  $\phi$ 는 계수로서  $\phi \geq 0$ 이고,  $\phi \neq 0$ 이면 대상의 수(number)와 고른 정도(evenness) 사이의 가중치가 된다.  $\phi$ 가 클수록 고른 정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고  $\phi=0$ 이면 대상의 수만을 감안하는 것이다.

만약  $\phi=2$ 이면 위 식은 아래와 같이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의 역이 된다.

$$I = \sum S_i^2$$

이 지수를 적용해 10개 작목 그룹의 농지 사용 형태가 얼마나 다각화돼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농지 사용형태의 다각화 지수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연도.

다각화 지수는 1968년 이후에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수의 감소는 농지의 사용 형태가 다각화되지 못하고 집중화 또는 균질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잡곡, 밀, 콩 등이 수입에 의해 대체되고 보리, 구근류, 뿌나무 등에 대한 시장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그 재배면적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과 현대화 중심의 생산구조 개편은 상업성 작물 생산의 확대와 연결되면서 농지 사용 형태의 집중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경지면적에서 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한 벼의 집중화 지수는 같은 기간에 꾸준히 상승하고 것으로 나타나 쌀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지 사용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0). 이는 같은 기간에 벼 재배면적은 안정적인데 반해 전체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농지 사용 지표는 축소·집약화·집중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업경관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농업용으로 농지의 전용이 늘고 있는 것은 경관의 물리적인 스톡을 고갈시키고, 집약적인 영농과 영농의 집중화로 인한 균질화는 농업과 연계한 생태 환경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농지 사용 형태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농업경관은 점차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농촌활력(또는 농촌개발)

농업은 농촌 지역과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에 기여한다. 특히 농업은 노동, 토지 등과 같은 투입재 사용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촌활력에 이바지한다.

넓은 의미에서 농촌활력은 농촌 삶의 '매력(attractiveness)'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OECD 2001). 지금까지 논의된 지표들은 주로 소득 수준, 고용 및 소득창출 가능성, 물리적인 하부구조, 사회자본, 환경의 질, 경관을 포함한 농촌 어메니티 등을 포함한다.

농업이 농촌활력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농업 고용과 소득창출효과, 그리고 경관 및 농촌 어메니티의 제공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경관 측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업과 연계된 인구학적 측면과 소득 측면에서 농촌활력에 대한 지표들을 설정하고 산출하고자 한다(농림부 2002).

첫째, 농가인구의 구성비이다. 농가인구의 구성비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농업의 비중 또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1995년에 10.8%에서 2001년에 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3)</sup>

〈표 3-3〉 농가인구의 구성비

연도	전체인구(명)	농가인구(명)	구성비(%)
1995	45,092,991	4,851,080	10.8
1996	45,545,282	4,692,040	10.3
1997	45,991,257	4,468,172	9.7
1998	46,429,817	4,399,643	9.5
1999	46,858,463	4,209,799	9
2000	47,008,111	4,031,984	8.5
2001	47,342,828	3,933,250	8.3

자료: 농림통계연보, 2002.

둘째, 농림업 취업자의 구성비이다. 이는 농업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1995~2001년에 이 지표의 값은 1995년 12%에서 2001년 10%로 감소하였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고용효과가 감소함을 뜻한다.

23) 이러한 비중은 WTO 개도 회원국 전체와 비교할 때 8번째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http://www.fao.org/>).

〈표 3-4〉 농림업 취업자의 구성비

연도	전체 취업자(천명)	농림업 취업자(천명)	구성비(%)
1995	20,432	2,419	11.8
1996	20,817	2,322	11.2
1997	21,106	2,276	10.8
1998	19,994	2,399	12.0
1999	20,218	2,264	11.2
2000	21,061	2,203	10.5
2001	21,362	2,105	9.9

자료: 농림통계연보, 2002.

셋째, 농가의 교역조건이다. 농가의 교역조건은 농가 판매가격과 구매 가격의 비율로 정의된다. 1995년 기준으로 2001년에 농가의 교역조건은 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농가교역조건

연도	농가교역조건(1995=100)
1995	100.0
1996	100.9
1997	95.8
1998	86.4
1999	89.5
2000	86.0
2001	83.5

자료: 농림통계연보(2002)에서 계산.

끝으로, 도시와 농촌 거주 가계의 소득격차이다. 이는 농촌의 매력과 관련되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측면의 형평 또는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 지표는 1995년에 95%에서 2001년에 76%로 나타나 도농 사이에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 도·농간 소득격차

연도	농가소득(천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천원)	소득격차(%)
1995	21,803	22,933	95.1
1996	23,298	25,832	90.2
1997	23,488	27,448	85.6
1998	20,494	25,597	80.1
1999	22,323	26,697	83.6
2000	23,072	28,643	80.6
2001	23,907	31,501	75.9

자료: 농림업 주요통계, 2002.

## 제4장 NTC 관련 WTO 논의동향과 쟁점

### 1. WTO 농업협상의 진행 현황

WTO 농업협상은 농업협정 제20조에 명시된 추가 개혁 계획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표 4-1). 이른바 제1단계 농업협상(2000년 3월~2001년 3월)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의 틀 안에서 관련 의제들에 관해 논의했는데, 회원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2단계 농업협상(2001년 3월~2002년 2월)은 제1단계 논의에서 다룬 의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NTC와 관련한 논의는 제1단계 논의와 달리 구체적인 NTC 요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였다.

2002년 12월 현재 농업협상은 세부원칙(modalities)을 설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즉 농업협상을 통해 WTO는 2003년 3월까지 회원국의 약속이행 공식과 기타 세부원칙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WTO 도하(Doha)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3년 9월 개최 예정인 제5차 WTO 멕시코 각료회의에 종합적인 이행계획서(안)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2005년 1월 1일에 일괄타결방식에 의한 전체 협상의 일부로서 농업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표 4-1〉 농업협상의 절차

	제1단계 (Phase 1)	제2단계 (Phase 2)	세부원칙 설정 (modalities)
기간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2월	2002년 3월 ~2003년 3월
회의 수	7	8(공식+비공식)	6(공식+비공식)
제출된 제안서 수	45	107	-
제안서 제출국 수	121	-	-
주요 의제	수출보조와 경쟁 수출세와 수출제한 시장접근: 관세, TRQ 시장접근: 특별긴급 관세 국내보조 개도국 NFIDC 결정문제 전환국 경제 NTC 동물복지 및 식품 품질 평화조항	TRQ 관리 관세율 감축대상 국내보조 수출보조와 수출신 용 국영무역 및 무역 단일 창구 수출세와 수출제한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제 허용보조 블루박스 보조 특별긴급관세 환경 무역특혜 식량원조 소비자정보 및 표 시제 분야별 자유화 개발박스, 특별우대 조치	수출보조, 수출경쟁, 수출세와 수출제한 시장접근 국내보조

주: DDA를 출범시킨 도하(Doha) 각료회의는 2001년 11월에 개최됨.  
자료: WTO(2002)를 기초로 정리함.

## 2. NTC 관련 국제논의 동향

### 가. WTO

WTO는 1997년 5월부터 WTO 농업위원회 회의에 앞서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AIE) 회의를 계속해 왔다. WTO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및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는 노르웨이, 일본, 한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8년 6월에 노르웨이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토의문서를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노르웨이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일부 기능이고, 농업생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이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시장실패에 따라 충분히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개입과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000년 11월 15~17일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4차 특별회의에서는 제3차 특별회의에서 EC, 일본, 한국,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28개국이 공동 작성하여 제출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에 대한 6개 문서가 주요 논의대상이 되었다. 또한 2000년 12월에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비록 그 채택에는 실패하였지만 각료선언문 초안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용어 대신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이란 용어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특히 환경보호의 필요성, 식량안보,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발전, 식품안전 등을 포함한다(위생검역 및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목적이 분명하고 투명하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리고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WTO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도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반영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주목하고, 농업협정에 규정된대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NTC Conference

2000년 7월 1~4일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제1차 국제회의가 EU, 일본, 스위스 등 4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노르웨이 울렌스방(Ullensvang)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EU, 일본, 한국, 모리셔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NTC 6개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관련된 6개의 주제를 정해 주제발표<sup>24)</sup>를 하였다. 주요발표 내용으로 농업은 국토의 적절한 보전기능, 수요공급의 특성, 다양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공공재적인 성격, 개도국에서의 비농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 특수한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WTO의 농업개혁과정에서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농촌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의 신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환경보전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WTO 규정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의 신축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차기 농업협상은 농업협정문 제20조에 기초하여 적절한 농업생

---

24) ①농업의 특수성과 WTO내에서 농업을 분리하여 취급해야 할 필요성(Specific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and the need to treat agriculture separately within WTO), ②농촌개발을 위한 농업의 기여(Agriculture's contribution to rural development), ③식량안보 및 국내 농업생산의 역할(Food security and the role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④환경적 및 문화적으로 NTC와 관련된 농업의 기여(Agriculture's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ly and culturally related non-trade concerns), ⑤개도국과 비교역적 관심사항(Developing countries and non-trade concerns), ⑥NTC를 다루기 위한 국가정책 계획에 있어 신축성 필요(The need for flexibility in national policy design to address non-trade concerns).

산을 통해 NTC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NTC Conference는 NTC그룹을 포함하여 불가리아, 프랑스 등 42개국이 참가하여 2001년 5월 28~31일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참가국이 식량안보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된 문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 수입, 재고비축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식량안보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없고, 현실적이고 신축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개도국들은 식량원조가 수혜국의 국내생산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내생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개발은 NTC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고 협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각국의 다양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책 수행의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의 허용보조(green box)로는 농촌개발을 다루는 것이 부족하다는 데 많은 나라가 동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참가자는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가 개도국과 빈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소규모 개도국의 경우 신축적인 정책 추진이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3차 NTC 회의는 2001년 11월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시 개최되었는데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40여개국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NTC가 모든 나라의 관심사항이라는 점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WTO에서 허용되도록 공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농업분야 선언문에 그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4차 NTC 회의는 WTO 농업협상에서의 NTC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조율하기 위해 2002년 6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는데 NTC 6

개국을 포함해 54개국에서 농업 관련 각료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NTC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하 각료선언의 약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국가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강화 및 농촌지역 개발,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2003년 3월에 결정될 WTO 농업협상의 새로운 세부원칙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러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핵심 요소로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러한 관심사항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각료들은 기존의 세 차례 NT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개발, 식량안보, 환경보호와 같은 NTC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세부지침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sup>25)</sup> 또한, 농업협정 제20조와 도하각료선언에 명시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다자적인 농산물 교역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각료들은 NTC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농업생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역사·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인정할 수 있는 다자규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25) ① 농촌개발: 국가마다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모든 국가는 농촌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농업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② 식량안보: 모든 국가는 국내 생산, 수입, 적절한 경우, 공공비축 등의 정책 조합을 통해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 ③ 환경: 모든 국가는 생물다양성, 농촌경관의 유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및 재난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농업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다. 기타 국제기구

### 1) FAO

1995년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UN 식량농업기구(FAO) 창설 50주년 기념 농업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퀘벡선언문(Quebec Declaration)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the multiple functions of agriculture)’이란 표현이 포함된 후, 1996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채택된 로마선언문(Rome Declaration)에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the 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을 명문화하였다.<sup>26)</sup> 2002년 6월에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식량안보의 추구는 각국의 다양한 농업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DDA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하는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각국이 국내생산을 중심으로 수입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식량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 OECD

FAO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1998년 3월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개념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이 각료 공동선언문에 명시되었다. OECD 농업각료회의의 공동성명에는 각국의 상이한 농업여건,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 확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고조 등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의 신축성

- 
- 26) ① 식량안보의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각국의 통일된 행동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② 식량안보는 식량수입과 재고관리, 국제무역과 더불어 적절한 국내생산이 필요함.  
 ③ 식량안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달성해야 함.

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1987년 합의한 농업정책의 개혁 방향은 계속 유지하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각국의 상이한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대한 농업정책의 신축성은 허용되어야 하며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행동계획을 통하여 세계의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98년 5월 제127차 OECD 농업위원회에서 다원적 기능은 1999/2000 OECD 농업위원회 주요 논의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8년 12월 제128차 농업위원회에서 사무국이 마련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정책분석을 위한 틀(Multifunctionality: A Framework for Policy Analysis)’을 기초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문서에는 ▲다원적 기능으로서의 농업의 역할, ▲농업의 외부효과와 공공재의 특성, ▲농업의 비식품서비스(non-food services)에 대한 수요, ▲결합생산과정(joint production process), ▲농업 및 비농업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WTO, OECD에서 농산물수입국의 입장반영에 적극적인 노르웨이는 차기협상을 앞두고 수입국 입장을 조율,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워크숍’을 1999년 3월 9~11일에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농촌고용, ▲식량안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정책대안 등이 쟁점사항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2000년도 OECD 각료이사회 공동성명(Communiqué)에서는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농업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농업개혁을 추구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광범위한 농업개혁 추진과정에 있어 식품안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과 같은 농업의 다원적 특성을 인정하였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OECD 워크숍이 2001년 7월 2~3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 및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은 2000년에 최종 승인된 사무국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 대한 분석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실증분석작업을 행하고, 이 결과를

종합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결합생산과정,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측정 방법, ▲다원적 기능의 공급 대안에 관한 논의, ▲정책집행비용(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향후 OECD 다원적 기능의 작업방향 등이다. 동 워크숍은 다원적 기능을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한 OECD의 작업결과로서 WTO의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NTC 관련 국별 및 쟁점별 협상제안서 분석

#### 가. 제1단계 농업협상

제1단계 WTO 농업협상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동 협상에서는 45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한 회원국수는 121개국에 이른다. 제1단계 논의에서 NTC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한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스위스, 모리셔스, 노르웨이, 폴란드, 콩고, 요르단 등 9개국이 NTC를 강조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들이 제시한 NTC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구조조정, 농촌개발, 빈곤경감 등으로 농업협정이 예시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범위보다 폭넓은 내용이다. 이밖에도 제1단계 논의 가운데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38개국 그룹이 NTC에 관한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담은 노트를 2000년 9월 회의에 제시한 점이다.<sup>27)</sup> 이 노트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27) 38개 회원국은 Barbados, Burundi,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EU, Fiji, Iceland, Israel, Japan, Korea, Latvia, Liechtenstein, Malta, Mauritius, Mongolia, Norway, Poland, Romania, Saint Lucia, Slovak Republic, Slovenia, Switzerland,

관한 회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폭넓고 다양한 접근방식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나타냈다.

### 1) 9개 회원국의 NTC 관련 주요 제안내용

#### 가) EU

EU는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농촌개발, 빈곤경감 등 선진국과 개도국에 모두 요구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재를 공급하는 농업의 특수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지불은 환경보호, 농촌발전, 빈곤경감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목표에도 기여하며, green box에 무역을 최소한 왜곡하는 조치만 포함되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환경보호, 농촌개발, 빈곤경감, 동물복지,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 중요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환경보호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사회적 목표인 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 농업협정에 수용되어야 하며, 이런 조치들은 투명하고 무역을 최소한만 왜곡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농촌의 지속적인 활력 유지와 빈곤경감에 대한 기여도 중요한 다원적 기능의 요소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새로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TO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예방의 원칙이 오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원칙의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무역자유화가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다자간 협정의 개발, 적절한 표시제도, 동물복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상은 감축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개도국의

빈곤경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유지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보조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나) 일본

관세수준 및 시장접근물량은 다원적 기능의 발휘 및 식량안보 확보를 고려하고 품목별 수급상황, 국제수급 상황 및 농정개혁의 진척상황을 감안, 유연성을 확보하여 적절히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UR 협상에서 관세화된 품목은 각국의 다원적 기능 발휘와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 및 식량안보 확보 등을 고려하고 농정개혁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허용보조정책의 요건 개선,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정책의 존속, 국내 지지수준을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규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출국영무역은 국제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어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화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에 관한 규율과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양자간·다자간 식량원조 시스템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부족 등의 상황에 있어서 현물용자를 할 수 있는 국제비축제도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 다) 스위스

스위스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리적 표시, 소비자정보 표시, 식품안전, 동물복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TO 협상이 수많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해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NTC 달성수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이후에 감축보조와 blue box의 기준, 범위에 대해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절히 반영하여 허용보조, 블루박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명확성을 바탕으로 감축보조는 더 많이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허용보조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NTC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허용보조는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보조이므로 상한을 설정해서는 안되는데, 허용보조에 상한을 설정하면 사회마다 필요로 하는 양과 질이 각각 다른 비상업적 재화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NTC와 개도국의 정당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분석과 적절한 수단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접근 협상은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지향해야 하고 NTC와 S&D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NTC와 S&D가 보다 잘 고려될 수 있도록 blue box와 green box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의 발전, ▲빈곤경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보호(생물다양성 포함), ▲국토(countryside)의 유지, ▲식량안보, ▲식품안전(예방원칙 포함), ▲동물복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라) 모리셔스

모리셔스는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통된 관심사이나, 이러한 관심사항에 대처하는 수단은 각국이 처한 여건의 특수성과 다양성 때문에 국가마다 다르고, 모든 나라에 적합한 단일수단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NTC를 달성하기 위해 투명한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재정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무역왜곡이 없거나 최소한’이라는 접근은 대부분의 소규모 섬나라개도국이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소규모 섬나라개도국은 농업이 다원

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인정받아야 하며, 특히 소규모 섬나라개도국이 농업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협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리셔스는 식량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각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규모 섬나라개도국은 대부분 식량부족 국가이면서, 식량원조의 수혜국은 아닌 나라이므로 식량안보는 ▲외환보유고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출收入 보장,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생산을 권장(특정 품목을 감축약속에서 제외하는 것이 식량생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기부에 의한 국제식량재고 비축, ▲적절한 농업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 등과 같은 조치가 결합될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마) 한국

회원국의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과 개도국 우대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농업협정은 비교역적 관심사항과 소규모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다양한 농업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분야별로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비롯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나라가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속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감안하여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국내보조와 관련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은 보다 신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농업협정상 허용된 조치를 포함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보조<sup>28)</sup>,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조<sup>29)</sup>,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sup>30)</sup>,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보조<sup>31)</sup> 등과 같은 목적의 보조는 감축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바) 노르웨이

농업의 특수하고 다원적인 기능이 인식되어야 하고 농업분야는 다자무역체제내에서 계속 특별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NTC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정책목표와 농업생산여건이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농업개혁은 하나의 기준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one-size-fits-all) 접근방식에 기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 28)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활력유지, 전통문화의 보전 등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교역적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직접지불 등의 보조를 말하며 특히,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주곡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직접지불,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직접지불 등 주곡의 국내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보조 등임.
- 29) 시장개방 확대, 기상이변, 가격변동 등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위험이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조의 범위 확대 및 요건의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함.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요건을 마련할 때는 특히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30) 많은 국가에서 농업생산과 농촌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규모 가족농의 존속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조임.
- 31) 개도국의 국내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 특히,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의 하부구조 건설 및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지원 등은 계속 허용함.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생산조건과 잠재력, 정책목표,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NT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정책 설계에 있어 신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국가간 또는 국가내에서의 생산조건에 대한 차이 때문에 비교열위에 있는 나라의 경우 NTC를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생산과 연계된 정책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경쟁과 관련된 조치는 NTC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NTC가 달성된다면, 이런 조치들은 보다 엄격한 규범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NTC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노르웨이는 수출경쟁 관련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사) 폴란드

폴란드는 농업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적응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식량안보, 농촌지역의 적정수준의 생활수준 유지, 환경보호,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 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농업의 기능이 보존되도록 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NTC와 직접 관련된 국내정책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국내보조와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신축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 콩고

콩고는 모든 회원국이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원리만으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추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수출보조금이 개도국의 식량안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농산물교역의 자유화와 수출보조

의 철폐가 식량안보를 위한 진정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콩고공화국의 경우에는 ▲농촌개발, 빈곤경감, 식량안보, 환경보호, ▲수산자원 : 최빈개도국산 수산물의 무관세 수입 허용, ▲목재 및 목재 이외의 임산물 : 멸종위기에 처한 콩고공화국산 동식물 중에 대한 무관세 수입 허용, ▲국가정책(경관, 영농유형)의 형성에 있어 농업의 다양성과 신축성 등과 같은 것이 주요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 자) 요르단

요르단은 NTC와 관련하여 관세화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급증 또는 가격하락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세이프가드(SSG), 수량제한 부과 등을 모든 개도국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이 빈곤경감, 농촌개발, 농촌고용, 사막개간, 농업분야 다각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는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32)</sup>

32) 요르단 산악지대의 대부분은 올리브 재배 외에는 어떠한 농업활동도 불가능함. 올리브 재배는 환경친화적이고(물을 적게 소모, 토양침식 방지) 사막화방지에 기여하며, 올리브오일은 빵과 함께 인구의 대부분에게 주요 식량을 제공함. 또한 농촌고용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음. 지중해연안 국가에 비해 생산비는 높지만, 올리브 재배의 사회적, 환경적 긍정적 효과를 포함하여 경제 전체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함. 올리브오일 관세의 급격한 감축과 SSG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수많은 농가의 농업 포기, 사막화 증가, 사회적 불안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올리브 재배 포기는 전통적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음. 현 발전단계에서 요르단은 별도의 재정지출 없이 발전 및 환경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함.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 국내정책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왜곡적 영향은 불가피할 수도 있음. 이런 관점에서 민감한 분야의 농민들은 신축적인 관세 등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사막지역에서 양을 사육하는 것은 구약성서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서 문화적 유산이고,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임. 요르단은 적당한 방식을 통해 정부가 이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2) 주요 회원국별 입장

### 가) NTC 국가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모리셔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이른바 NTC 국가들은 각국이 다양한 NTC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농업협정이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농업협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NTC 국가들이 주장하는 NTC 관련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촌개발과 농촌의 사회 경제적인 활력의 강화
- ② 식량안보의 보장
- ③ 환경보전의 촉진
- ④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추구

NTC 국가들은 농업의 특수성과 비교역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WTO에서의 현행 협상에서도 농업에 대한 특별 취급이 계속되어야 하고(스위스),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은 농업생산 및 관련 서비스를 육성함으로써 농업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WTO 규정은 각국이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EU).

또한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적절한 국내보조와 국경조치의 조합을 통해 국내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국에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수입국과 수출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와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한국, 일본). 특히, 시장경제원리만으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NTC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개입에 의한 효율적인 정책이 NTC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각국 정부는 농업인들이 사회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써 발생하는 비용 및 소득감소를 보상해야 하며, WTO내에서의 농업개혁은 이러한 NTC를 추구하는 각국 정부정책의 신축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EU). UR 농업협정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다룰 수 있도록 한 허용보조는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정책(정부의 징수감면 포함)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이 취약한 대다수 개도국에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모리셔스), 따라서 WTO 농업정책개혁과정에서 선진국,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정책설계상 신축성을 부여하여 각국이 국내생산을 통해 NTC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노르웨이).

#### 나) 미국 및 케언즈 그룹

미국은 NTC와 개도국의 발전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농업협정에 기초하여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에 근거한 보조 조치를 추가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국의 제안은 최소한의 무역왜곡효과를 가지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가소득안정화 및 위험관리 수단<sup>33)</sup>,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sup>34)</sup>, 농촌개발<sup>35)</sup>, 신기술<sup>36)</sup>, 구조조정<sup>37)</sup>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모든 조치

33) 보조수준이 감소하고 생산자들이 시장신호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새로운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34) 환경보전은 이미 NTC의 요소임. targeted policy를 통해 각국은 생산자·소비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생산자들이 채택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35) 활기 있고 경제적으로 존립가능한 농촌공동체도 지속가능 농업에 필수적임. 농촌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경제발전 촉진, 기술 및 정보지원 등도 농촌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36) 대안적 기술과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 제공.

37)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decoupled income support나 기타 시장지향적인 조치를 통해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촉

는 목표가 분명하고(targeted), 투명하며(transparent), 최소한의 무역왜곡효과(minimally trade-distorting)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케언즈 그룹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장려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케언즈 그룹은 개도국 우대 조항은 농업 및 농촌개발, 식량안보, 국내식량생산 확대를 위한 생존형 소규모농업을 포함하는 개도국들의 정당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개도국들이 농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식량안보,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 등의 특정한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보조 조항을 개선하고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과 식량안보를 돕기 위해 기술원조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케언즈 그룹은 NTC와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농업협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협상의 목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 확립’이며 NTC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한 만큼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중심이 되거나 무역왜곡적 조치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조치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NTC로 인정하는 것은 환경,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이며, NTC를 다루는 정책조치는 시장에 최소의 영향만을 주어야 하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지불 등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진할 수 있을 것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민영화를 위해 노력중인 국가 또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 다) 개도국

개도국들은 NTC의 틀 안에서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보호조치, ▲농촌 거주자를 위한 고용기회 제공, ▲농촌개발의 촉진, ▲국내생산의 보호와 수입 통제, 빈곤타파 등 주로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도국들은 이상과 같은 수단이 개도국 우대조치의 틀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의 관심사항과 차별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허용보조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및 기타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지적하면서 허용보조는 NTC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개도국이 아닌 소수 선진국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sup>38)</sup> 결국 허용보조는 소농의 생계보호, 식량안보 등과 같은 개도국의 NTC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에는 농촌고용 및 식량안보 등의 관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Development Box'라는 형태로 추가적 신축성을 부여해야 하며, 'Development Box'의 목적은 개도국들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국내생산능력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고 소농의 생계를 보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sup>39)</sup> 'Development Box'를 통해 개도국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품목에 대한 수입통제, 관세 부과, 국내보조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인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는 식량안보가 케냐로서는 가장 중요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인 바, 부채문제, 국제수지의 어려움, 불리한 교역조건으로 인해

38) 많은 개도국이 지급하는 허용보조지출은 전체 허용보조지출의 0.5% 이하임.

39) 특히, 핵심적인 주곡(key staples)에 대한 개도국의 국내생산능력 보호 및 향상, 식량안보와 특히 가장 빈곤한 계층의 식량접근가능성 증대, 농촌의 빈곤층에 고용제공 또는 적어도 기존 고용은 유지, 기존에 핵심농산물(key agricultural products)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을 값싼 수입농산물로부터 보호, 보조를 받은 값싼 농산물을 개도국에 덤핑 수출하는 것 금지 등의 목적을 추구함.

재정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국가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을 가능한 한 국내생산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케냐를 비롯한 11개 개도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Development Box** 수립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40)</sup>

한편 인도는 농업협정의 전문과 20조에 협상에서 식량안보를 비롯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대로 다루어지려면 특히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에 대한 규범이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규모 농업국가에서 식량안보는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는 점이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용보조에 개도국이 농업다각화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농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농촌고용과 식량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sup>41)</sup> 개도국들이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생계에 대한 관심은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다원적 기능이라는 이름하에 옹호하고 있는 NTC와 혼동되거나 동일시되어서는 안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는 생존차원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도국을 위한 식량안보박스(**Food Security Box**)의 설정을 제안하

---

40) 개도국우대조치를 통합·강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Development Box**를 만들어야 함. 여기서는 개도국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긴밀하게 관련된 긴급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국내보조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신축성을 인정해야 함. 개발에 대한 관심사항에는 식량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 농업생산성을 높일 필요성, 식량안보, 소농보호와 빈곤경감 필요성이 포함됨. 그러나 개도국이 **Development/Food Security Box**하에서 지급하는 국내보조 조치와 개도국우대 보조 조치는 전적으로 상계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

41) 예를 들면, 생산성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작물에 대해 개도국이 제공하는 투입재 보조는 허용보조에 포함되어야 함.

면서, 개도국의 빈곤경감, 농촌개발, 농촌고용, 농업다각화 조치는 감축의 무에서 면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라) 아프리카 국가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빈곤경감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보조 분야에서 개도국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데 있어 소규모 생존농가의 활력, 농촌빈곤경감, 식량안보, 생산다각화 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모로코는 국가 전체의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정치안정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농촌개발 확보, 국내생산 장려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활동 유지 및 국가전체적인 인구의 균형적 분포,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과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에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다원적 기능 추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 창설 및 동 기금에 대한 재원의 선진국 조달을 제안하였다. 세네갈은 개도국이 식량안보, 농촌지역의 고용보장, 빈곤경감을 위해 국내보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신축성 있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원조의 투명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식량안보가 개도국 농업생산에 대해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왜곡 방지, ▲농업용수 관련 작업 및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을 위한 특별 농업투자기금 창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나미비아는 정확성 부족, 오용가능성 때문에 NTC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반대하지만 식량안보, 농촌빈곤, 실업 등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NTC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투명성 원칙이 NTC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NTC는 정당하고 측정가능하며 적격의(qualified) 가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빈곤층의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마) 남미

수출보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식량순수입개도국(NFIDCs)이 보조금이 지급된 저렴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브라질 등 남미 7개국은 오히려 이러한 수입이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국내농업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수출보조금은 생산을 선진국으로 집중시키고 개도국 농업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개도국의 식량불안(Food Insecurity)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무역의 자유화와 그에 따른 수출보조금의 철폐만이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남미공동체(Mercosur) 중 한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NTC를 추구함에 있어 농업협상의 목표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부유한 나라의 무역왜곡적 정책으로 인하여 정당한 NTC인 농촌빈곤, 고용, 환경보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유한 나라의 높은 관세와 많은 보조금,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인상으로 인하여 개도국 농민은 경쟁할 수 없어 이미 거대해진 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가공품이 아닌 원료농산물로 외환을 획득하기 위해 생산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늘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바) ASEAN

부속서 2의 허용보조 기준들은 무역왜곡이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같은 개도국의 필요사항을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설계에 있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수준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국제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조치와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표 4-2> 쟁점별 주요 제안내용

쟁점	미국	케언즈 그룹	EU	NTC 국가	개도국
식량안보	무역자유화 강조	무역자유화 강조	국내생산이 유일한 방안은 아님	국내생산의 중요성 강조	국내생산의 중요성 강조
	국내생산 유지하기 위한 정부개입 불인정		국내생산 유지하기 위한 정부개입 인정		-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개도국의 신축성 부여 인정				
농촌개발	현행 허용보조 조치로 충분히 달성		현행 허용보조의 약간의 확대만으로도 충분	허용보조 규정 신축적으로 확대	허용보조는 주로 소수 선진국만 사용, 개도국을 위한 개발박스 제안
환경보호	환경보전은 이미 NTC의 요소임.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생산자들이 채택하도록 지원	-	현행 허용보조의 약간의 확대만으로도 충분	환경 관련 NT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국내생산 필요	시장접근과 허용보조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관련 NTC 유지, 개도국 우대조치 부여

### 3) 평가

WTO 회원국들의 제1단계 제안서를 살펴볼 때, 제안서에 포함된 NTC는 식량안보, 환경, 구조조정, 농촌개발, 빈곤경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별로 각각의 NTC에 대해 부여하는 비중과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가는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여타 회원국은 식량안보, 환경보존과 같은 쟁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정책목표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발전단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변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정책상의 차이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1단계 논의 가운데 NTC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거의 모든 회원국은 농업의 NTC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NTC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NTC를 위한 보조 조치 측면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나 허용보조(또는 그린박스) 이외의 추가 보조가 필요하지의 여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또한 제안서에서 대다수의 회원국이 개도국에 NTC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허용보조 조치만으로 NTC를 달성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와 충분하다는 견해가 가장 큰 이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허용보조 조치가 NTC를 다루는 가장 합법적이고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케언즈 그룹의 의견에 맞서 NTC 국가들<sup>42)</sup>은 생산 및 교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쳐야 한다는 허용보조 조치의 이행요건은 국내 생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도국들에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NTC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처지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많은 개도 수출국은 허용보조의 틀 밖에서 NTC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부유한 나라에 특별우대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산업이나 서비스 등 다른 경제활동도 같은 NTC를 갖기 때문에 WTO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모든 협상분야에서 NTC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NTC 관련 제안서에 대해 대부분의 농산물수입국은 동조하는 입장이었고 수출국들은 상이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농업협상에서 NTC를 고려해야 하지만 NTC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목표지향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무역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농업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농업개혁 과정에서 NTC와 개도국 우대를 고려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무역을 왜곡하

42) NTC 국가들은 NTC가 생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NTC를 위해서는 생산에 기초하거나 생산과 연계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논의 경우 토양침식을 막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한국을 포함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EU를 중심으로 주장되 오던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호 등 NTC에 대해 농산물수출국인 케언즈 그룹국가들과 일부 남미 및 아프리카국가가 보호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우려와 반발이 있었으나 많은 개도국이 농촌 빈곤퇴치, 식량안보, 고용안정 등의 차원에서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EU<sup>43)</sup>는 식량안보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만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국내생산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 NTC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과 연계된 조치를 도입하기보다는 허용보조 범위내에서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다른 NTC 국가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수입국간 공조, 특히 EU와의 공조관계는 전반적인 공조보다는 사안별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제2단계 농업협상

제2단계 농업협상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07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제2단계 협상에서는 제1단계 협상에서 다른 주요 내용들을 개별적인 주제별로 심층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NTC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제안서도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개발, 환경, 소비자정보 및 표시제, 개발박스 등 의제별로 제출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43) NTC와 연계한 국내보조와 관련해 EU는 해당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목 표화된 접근방식을 주장했고 이러한 조치가 투명하고 최소의 무역왜곡을 가져 와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는 환경보전 정책조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1) NTC 관련 의제별 주요 제안내용

### 가) 식량안보<sup>44)</sup>

식량안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생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국내 생산을 유지하거나 촉진하는 정책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원국은 식량안보의 수단인 국내생산과 재고 및 국제무역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식량안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 가운데는 강조하는 부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등 12개 개도국은 개도국의 입장에서의 식량안보란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건전한 유통체제, 접근가능성(특히 빈곤계층에 있어서의), 국내식량생산에의 일정부분 의존 등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개도국은 이미 'development box'를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 제안은 개도국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소비자를 위한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45)</sup> 이러한 제안들의 기본취지는 ▲국내생산능력의 보호 및 증진, ▲식량안보 및 식량접근성의 증진(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농촌의 빈곤계층에 제공되고 있는 기존 고용기회의 제공 및 보장, ▲저가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부터 소농 및 한계농의 보호,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유연성의 확보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개도국의 저소득 및 저자원 빈곤농민

44) 12개 개도국(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일본, 페루, 미국 등이 제안서를 제출함.

45) 인도도 이와 유사한 개념인 대규모 농업국가의 식량안보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food security box'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음.

이 생산한 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무쿼터 및 무관세 시장접근의 제공, 첩두관세 및 관세율경사의 철폐, 비관세장벽 특히 위생 및 검역과 관련된 장벽의 철폐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식량안보, 농촌개발, 농촌 고용, 빈곤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모든 국내보조의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 및 선진국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식량생산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농산물가격을 저해하는 수출보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식량안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체제로서 식량재고정책은 현행 허용보조(green box)나 감축대상면제의 광범위한 정의하에 포함되어야 하며, AOA는 긴급식량재고에 관한 공동유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식량안보계획을 제공하고 선진국에 의한 재정지원의 장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렴한 수입품의 범람으로 인한 변화로부터 소농과 한계농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세이프가드 수단이 모든 개도국에 제공되어야 하고, 농산물의 덤핑은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본은 제안서에서 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의 식량안보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국가들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 수입, 재고유지에 관한 복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국이 국내식량생산을 식량공급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혼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역규정이나 규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식량안보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으며 완전식량자급이나 식량수입에의 전적인 의존만으로도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생산, 수입, 재고 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혼합정책은 허용보조뿐만 아니라 국내보조와 국경조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고 관련규정은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에 관한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개선은 이들 국가의 기본식량의 구매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페루는 농업협정에 식량안보가 중요요소의 하나인 ‘Development Box’와 ‘Rural Development’와 관련된 기타 제안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SSG 조항은 개도국에만 허용, ▲개도국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가격안정체제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의 기본요소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AMS에 있어 개도국 기본식량에 대한 생산가치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수준의 상당수준 인상,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직접적인 관련비용은 AMS 및 de minimis 계산에서 제외, ▲green box는 무역 및 생산에 왜곡을 야기하는 수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검토,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 철폐 및 S&DT 조항 강화, ▲평화조항의 적용은 연장불가, ▲선진국은 모든 종류의 비관세장벽 철폐, 특히 SPS수단 철폐 등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관세, 관세격차, 관세율 경사 등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거나 철폐하여야 하며, TRQ 물량 확대 및 관리방안개선도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보조의 철폐와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감축도 식량안보를 개선할 것인데 이는 수출보조와 무역왜곡적 국내보조는 보조가 지급되지 않는 국가의 생산을 저해하고 국제가격 하락을 통해 보조가 지급된 품목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개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생산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이 필요한 반면, 각 회원국이 자국의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에 기초한 무역비왜곡적 조치(criteria-based non-trade distorting measures)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보조에 관한 S&D 규정은 이 국가들의 국제무역체제에의 통합과 이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출제한에 관한 WTO 규율은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공급관리

목적의 수출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아에 직면한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식량원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생명공학을 포함한 기술의 발전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에 의한 생산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율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생명공학을 적용한 농산물은 개도국의 식량부족 및 기근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농약사용의 감소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수자원의 감소를 통해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식품안전<sup>46)</sup>

식품안전 문제가 농업협상에 대두된 것은 이번 협상이 처음이다. 식품안전에 대해 회원국들은 소비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감하면서도 이러한 보호 조치가 위장된 보호주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문제는 SPS 협정 가운데 제5조 7항<sup>47)</sup>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데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EU는 SPS 조항에 있어 예방원칙에 대한 분쟁해결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지지하려면 WTO 회원국이 합의한 양해서(Understanding)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양해서 작성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이 문제가 농업협상이 아닌 SPS 협정 아래 다루어져야 한다고 대응했다.

EU는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46) EU, 일본 등이 제안서를 제출함.

47) SPS 협정 제5조 7항 :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자는 식품안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 사전예방원칙의 사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U는 상소기구가 사전예방의 원칙이 SPS 협정 5조 7항에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SPS 수단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하여야 하고 이는 과학계의 다수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이 자국의 보호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제안서에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이 명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일본도 유럽연합과 같이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농업협정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GMO에 대한 소비자의 새로운 관심사항, 최근의 광우병 및 다이옥신 사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UR협상 타결 이후 GMO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전파는 증가하였으며 GM 작물의 재배면적도 증가하였다고 밝히면서 식품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행 WTO 협정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GM 식품의 안전성평가는 OECD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Codex에서도 Task force를 창설하여 2001년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였는데(2003년도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WTO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농촌개발<sup>48)</sup>

제2단계 협상에서 농촌개발에 관련한 의제는 식량안보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논의 대상이었다. 회원국들의 제안서 및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오래 진행됐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이 의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농촌개발이 특히 개도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선진국에

48) 사이프러스, 9개 개도국(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노르웨이, 일본 등이 제안서를 제출함.

있어 농촌개발은 개도국의 의제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쿠바 등 9개 개도국은 제안서에서 빈곤타파를 위해 농촌개발은 필수적이며, 농촌개발은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식량에서의 접근, 공평한 성장과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관개, 동력, 운송, 마케팅 및 기타 인프라 시설의 개선과 같은 생산 및 생산성 측면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AOA 규정은 개도국들의 자국농민의 생계보호나 국내생산 및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에 대한 신축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완화나 농촌개발을 위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이 개도국에 허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AOA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1) 개도국이 농업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인구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sup>49)</sup>, 2) 개도국이 국내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시켜 농촌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함<sup>50)</sup>, 3) 개도국의 저소득 및 자원

- 
- 49) ○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개도국은 적절한 수준의 관세를 S&D 수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개도국은 자국의 0 또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특히 농촌의 빈민층에 의해 경작되는 기초/기본 곡물에(basic/staple crops) 관련된 낮은 양허관세율을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함.
- 적절한 농업세이프가드체제가 소농 및 한계농을 저가수입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개도국에 제공되어야 함.
- 농산물의 덤핑은 금지되어야 하고 개도국은 농산물 덤핑이 자국의 농촌개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국경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
- 50) ○ 개도국에 의한 국내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모든 국내 자원수단은 빈곤완화와 농촌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모든 형태의 국내보조감축 약속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함.
- 농업 및 농촌개발목적의 정부정책을 국내보조감축 약속으로부터 면제해주는 6조 2항의 기본전제에 따라 동 조항은 i) 저소득 및 자원부족 농민의 통합을 지원하는 보조가 제공된 신용 및 기타 능력배양수단을 포함한 수단 ii) 국내소비를 위한 기본곡물의 국내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투입재보조 및 저소득 및 자원부족 농민에게 제공되는 품목 특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책수단

부족 농민의 수출품의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함<sup>51)</sup>, 4) 개도국의 저소득 및 자원부족 농민의 낮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채택<sup>52)</sup>, 5) 순식량수입개도국이 자국의 농촌개발 관련 관심사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sup>53)</sup> 등을 제안하였다.

사이프러스는 소규모 농업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인구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건불리지역(*less-favoured*), 한계지역(*marginal*), 비특혜지역(*disadvantaged*)

도 감축약속에서 제외되도록 확장되어야 함.

- o 보조가 지급된 생산이 개도국의 국내생산이나 개도국의 제3국에서의 시장을 대체하는 경우에 발동될 수 있는 특정한 별칙수단의 채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o AOA 부속서 2의 규정은 개도국이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된 수단은 *green box*의 S&D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함.
- 51) o 선진국은 개도국의 저소득 및 자원부족 농민의 수출에 대해 이들의 전반적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quota-free* 및 *tariff-free*의 시장접근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o 선진국시장에서의 개도국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첨두관세 및 관세율경사의 철폐.
  - o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하고 소규모 농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NTB 특히 SPS 수단의 철폐.
- 52) o 일부 선진국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세계시장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개도국이 제3국시장에서 경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철폐.
- o 개도국의 식량생산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농산물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 수출보조는 가능한 빨리 철폐되어야 함.
- 53) o 농촌개발의 범주에 포함된 NFIDC의 특정문제를 인식하여 Marrakech Decision은 NFIDC가 자국의 농촌개발 관련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원조를 특히 고가격/저생산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되고 강화되어야 함.
- o LDC/NFIDC의 농촌개발을 원활화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적 및 재정적지원의 제공이 주요 선진농산물 수출국에 의해 WTO의 고정수단하에서 착수되어야 함.

region)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동 지역이 향후 합의될 국별최대비율(national maximum percentage)의 범위내에 있는 한 보조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최대비율은 개도국에 대한 S&D 대우와 매우 열악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농촌개발은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의 빈곤완화와 국가경제발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선진국에 있어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나 환경보전을 포함한 여러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과 동시에 일정수준의 농촌인구 유지와 이를 위한 농업의 기여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자국의 농촌개발의 기초로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역규범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하에 현행 협상을 통해 설립된 다자간 무역규범은 각국의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공존을 허용하도록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AOA 20조와 부합하는 지속적인 개혁과정은 각 회원국의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보조와 시장접근에 관한 규범에 있어서 신축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green box만으로 농촌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의 시장접근기회의 개선은 이들 국가에 있어서 농업소득증대에 중요하나 이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는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균형 있는 국토개발이나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54)</sup> 또한 농촌 지역의 활력보장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도 충분히 인지되고 적절히

54) 1km<sup>2</sup>당 14인이라는 유럽 최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에서 운송거리는 매우 길며 따라서 농촌사회의 활력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중요정책 목표로 간주되고 있음.

다루어져야 하는 반면 무역왜곡도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WTO 협상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농업부문이 농촌개발과 농촌지역의 활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구성에 있어서 신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소득이전의 구성에 있어서 고용효과가 생산과 상호 관련 있거나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되어야 하며, 농업생산은 농업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건불리농촌지역에서의 높은 생산비용하에서 green box만으로는 생산을 지속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교열위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 부분 생산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현행 green box의 농촌개발조항은 농촌지역의 농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라) 환경<sup>55)</sup>

환경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포괄적인 무역자유화와 그린박스 조치가 환경에 대한 관심사항을 다루는 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국내보조 조치가 직접 생산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다.

케언즈 그룹은 환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창출해 내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무역 및 생산왜곡적 보조금은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국제가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개도국의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감소시켜 생산 및 투자를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적인 보조를 구분해 내는 것이 농업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있어서 핵심과제인 바, 무역 및 생산왜곡적 보조를 철폐함으로써 환경

55) 케언즈 그룹, 일본, 노르웨이 등이 제안서를 제출함.

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AOA는 Annex 2의 para 12에 의거한 비왜곡적 수단을 통한 환경목적의 추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부의 명확히 정의된 환경 또는 보존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급액이 정부 프로그램을 따름으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손실에 국한될 경우 환경프로그램의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은 선진국에 있어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해석이 매우 관대하게 행해져서 일부 무역왜곡적 보조가 환경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조항에 대한 환경목적 지불의 특정기준이 green box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환경정책은 환경보조정책이 특정 환경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비연계되고 투명하며 목표가 명확히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는 WTO 농업개혁과정에서도 상호 합의된 규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일정수준의 국내생산을 확보할 수 있고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다자간 무역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유일하고 적법하며 적절한 정책수단으로서 옹호되고 있는 green box조치도 중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국내농업의 취약성에 따라 green box조치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green box의 요구조건은 NTC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한 기타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행정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자농업무역체제도 정책수단의 혼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생산조건의 차이로 인해 비교우위가 없는 국가들은 생산 관련 정책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제안서에서 농업은 토지보존, 수자원 배양, 자원환경보전 및 자연경관 창조 등의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편익이 증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편익은 무역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으며 공급과 수요가 시장기구에 의해 적절히 조정되지 못하므로 환경적 편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국내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green box** 조치만으로는 국내생산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생산을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AOA 20조하의 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마) 소비자정보 및 표시제(labeling)<sup>56)</sup>

일반적으로 소비자 정보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구매 권리와 연관된다. 곧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 선호에 따라 제품에 대해 알고 구매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스위스는 환경보호, 농촌개발 또는 식품의 질과 같은 NTC를 다루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 중에서 표시제는 최소한의 무역왜곡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다수의 의무적 표시제도나 자발적 표시제도도 개별정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GMO** 표시, 유기생산방법의 표시, 기타 환경측면의 표시 및 동물복지 등을 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별기준의 다양함으로 인해 농산물의 국제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은 국제적으로 조화된 방법으로 특정 NTC를 다루는 데 기여하여야 함과 동시에 농산물교역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NTC를 다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소비자정보는 농업협상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자정보와 관련 있는 기존 WTO 규범의 검토와 이러한 규정이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선호를 반영하는 데 충분한가를 결정

56) EU, 스위스 등이 제안서를 제출함.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

EU는 표시제와 그린박스 조치를 통해 동물복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동물복지 기준을 지킴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린박스 조치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는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표시제도가 WTO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식품 및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에 관한 표시제도의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 바) 개발박스<sup>57)</sup>

개발 박스(development box)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S&D)의 일부분 또는 그 연장선에서 제기되었다. 논의의 핵심은 농업협상 결과에 있어 개도국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발 박스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관련 조치 곧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다른 형태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WTO 규범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스위스는 개도국은 국내소비와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생산향상이나 농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조치를 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별 농업정책개혁은 모든 회원국이 적절한 약속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수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는 개발박스에 대한 논의의 핵심요소는 1) AOA의 개발박스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는가, 2)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정한 현행규정에 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빈곤완화 또는 다자무역체제의 통합을 위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가, 3) 어떤 기준에 의해 한 국가가 개발박스를 사용할

57) 9개 개도국(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짐바브웨), 스위스, 모리셔스, 일본 등이 제안서를 제출함.

수 있도록 허용되는가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쿠바 등 9개 개도국은 개도국의 농업생산과 무역에 대한 관심사항은 개도국 농업이 시장에 기초한 반면 선진국 농업은 상업적 농업을 행하고 있으며, 개도국 농업은 GDP의 높은 비중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이 외환공급의 주요 요소이고, 대부분의 기초식량 공급, 대다수 농촌 거주인구의 소득과 생존기반 제공, 농촌개발과 빈곤완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선진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이 생산성 향상, 고소득 및 가격변동에의 취약성 완화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개발박스는 이러한 유연성을 농업협정상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개도국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개도국내에서도 저소득 농민 및 자원부족농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이행가능한 개발박스 조치가 새로운 협정에 반영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조치는 협상의 3대 분야(three pillars)하에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제3단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개발박스하의 특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개도국에 있어서의 기초식량안보작물은 관세감축이나 기타 약속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함.
- 총 국내보조가 de minimis 수준 이하인 개도국은 S&D 조치의 일환으로 적절한 수준의 양허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개도국은 식량안보와 관련된 작물의 낮은 양허관세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선진국은 개도국의 저소득/자원빈약(Low income/Resource poor(LI/RP)) 농민에 의한 생산품목에 무쿼터, 무관세하의 시장접근을 제공하여야 함.
- 농업 및 농촌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국내보조 감축약속

으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6조 2항은 그 기본정신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촌고용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아래의 보조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함.

- subsidized credit이나 경쟁력 및 마케팅능력의 촉진을 통한 능력배양 수단 등
  - LI/RP 생산자에 대한 투입요소 보조나 기타 품목특정적 보조를 포함하여 기초작물의 국내소비의 생산증대를 위해 채택된 수단
  - 국내에서 잉여지역으로부터 부족지역으로의 기초작물 운송비용에 사용된 지원
- 품목특정적 보조와 관련된 *de minimis* 요구조건은 총액기준에서 계산되어야 하며 음의 값을 갖는 품목특정적 보조는 양의 값을 갖는 품목불특정적 보조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모든 개도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AOA의 일부로서 도입되어야 함.
  - 농산물의 덤핑은 금지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덤핑이 자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도국은 적절한 국경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 보조가 지급된 생산이 개도국의 국내생산을 대체하거나 제3국에 있어서 개도국의 보조가 지급되지 않은 수출을 대체하는 경우 발동되는 별치수단의 채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식량순수입개도국의 특성과 장기간에 걸친 식량안보문제를 인식하여 WTO내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 농촌개발 활성화 및 수입식량에 대한 의존도 약화 등의 구제수단이 양허사항에 포함되도록 Marrakesh Decision은 강화되어야 함.
  -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이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자금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기여로 국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함.

- 평화조항을 규정한 제13조는 연장되어서는 안됨. 그러나 Annex 2 (green box) 및 6조 2항(S&D)하에서 개도국에 의해 채택된 조치는 보조금 협정하의 어떤 조치로부터도 면제되어야 함.

## 2) 평가

제2단계 농업협상에서 WTO 농업위원회에 제출된 회원국들의 협상제안서의 대부분은 식량안보를 언급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이전의 농업협상이나 국제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시간 측면에서도 회원국들은 가장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는 식량안보가 농업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케언즈 그룹과 미국이 개도국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무역정책에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식량안보가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은 식량안보문제를 보는 관점이 상이한 바,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세계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시장접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 및 인도, 나이지리아 등은 일정수준의 국내생산 및 식량자급률 유지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이 식량안보 이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농촌개발이다. 이는 농촌개발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통된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촌개발은 선진국의 경우 농촌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에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식량안보, 빈곤경감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원용되는 정책수단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농업협정문 서문에는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협정 제20조는 개혁

과정에서 NTC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NTC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농업협정 제12조(수출금지 및 제한에 대한 원칙)와 부속서 2(환경보전 지원) 등으로 이들 조항은 NTC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NTC를 향후 협상과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는 NTC를 가급적 생산과 무역에 대한 왜곡효과를 덜 초래하면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분야에서 모색하고 농업협정문에 반영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WTO 농업협정에 NTC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NTC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즉,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Development box 이외에 Food security box, Multifunctionality box, NTC box 제정 등의 주장도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현재 NTC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이론적으로 NTC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것과 계량적인 조사연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WTO 시애틀 각료회의 농업 선언문 초안과 제4차 WTO 각료선언문에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전보다 조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향후 농업협상에서 NTC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 중요한 NTC가 어느 분야인지에 대한 검토작업과 함께 NTC에 대한 추가적인 논리개발 및 실행가능한 정책대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5장 NTC를 WTO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 1. 식량안보와 관련한 조치 제안

### 가. 논리적 배경

식량안보는 이미 WTO 농업협정에서 NTC의 한 구성요소로서 언급되고 있고 있다. 농업협정이 언급하고 있는 NTC 내용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8)</sup>

첫째, 전문(Preamble)은 농업개혁 프로그램에서의 약속이행은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의 필요를 포함한 NTC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59)</sup>

둘째, 제12조 1항(a)은 수출금지나 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60)</sup>

셋째, 부속서 2(Annex 2) 3항에 따라 식량안보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 비축제도는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58) 농업협정에서 NTC란 단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는 조항은 전문, 제20조 (c)항, 부속서 5 Section A 제1조 (d)항 등이다.

59)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ting that commitments under the reform programme should be made in an equitable way among all Members, having regard to non-trade concern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6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Member instituting the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ffects of such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importing Members’ food security...”

끝으로, 부속서 5는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와 같은 NTC의 요소를 반영한 특별조치(special treatment)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B항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주곡(쌀)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측면의 특별조치(이행기간 10년 동안 국내소비량의 4%)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농업협정이 명시하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NTC의 한 요소로서 식량안보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정은 식량안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이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둘째, 식량안보의 문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농업협정의 일부 조항은 사실상 일부 회원국이나 개도국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 재고, 무역 등이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며, 더욱이 국내생산을 통한 접근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협정이 인정하고 있는 것에는 국내생산 측면의 접근방식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끝으로, 농업협정은 식량안보에 중요한 주곡과 기타 작물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곡과 주곡이 아닌 작물을 동일한 규정 아래 다룬다는 사실은 농업협정이 주곡 측면의 식량안보를 거의 고려하지 않음을 뜻한다.

2001년 11월 Doha 각료 선언문은 농업협정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NTC에 관한 회원국들의 제안서 내용이 WTO 협상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61)</sup>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에서는 농촌

61)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take note of the non-trade concerns reflected in the negotiating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and confirm that non-trade concer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negotiations as provided for in the Agreement on

개발과 더불어 주로 개도국의 우대조치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진전된 조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 나.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 1) 기본적인 접근방식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WTO 농업협정은 식량안보와 관련해 주곡과 기타 농산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곡 중심의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주곡에 대한 수매 또는 가격보장이나 목표가격 설정 등을 통해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실도 주곡 중심의 식량안보 보장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정책 조치 측면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안보에 직접 관련되는 주곡을 다른 농산물과 구분하고 주곡에 대한 지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는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의 유지가 가장 우선해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곡을 정의하는 것은 기후, 지형, 토지사용 형태, 환경, 소비자의 선호, 전통, 문화 등 회원국의 자연조건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WTO 차원에서 주곡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기보다 각 회원국이 곡물 가운데 1~2개 품목을 주곡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기선언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의 작물을 곡물로 한정하는 것은 주곡에 초점을 둔 접근이고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주곡은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자급수준 이상으로 생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또는 초과 생산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조치로 인해 자급수준 이상의 곡물이 생산된다면 그 수준 이상부터는 식량안보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협정 부속서 5는 NTC 목적으로 선정한 특별조치 대상 품목에 대해 논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기준을 식량안보 목적의 주곡 선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적어도 농업협정 안에서 특별조치 대상품목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주곡 선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62)</sup>

둘째, 식량에 대한 주권의 확립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식량안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잠재적인 남북의 식량수요까지 감안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GATT XXI조의 안보예외조항에 기초해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내 조치는 무역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시장접근분야

시장접근분야에서 식량안보의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아래의 제안 ①과 ②는 독립적인 제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적인 조치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62)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가 제시한 기준은 기준연도(1986~88년)에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것, 수출보조가 제공되지 않을 것, 효과적인 생산 조정조치가 시행될 것, 식량안보·환경보전 등과 같은 NTC가 반영될 것 등을 들고 있다.

## ①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지속

우리나라는 농업협정 부속서 5 Section B에 따라 주곡인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가 주어지고 있는 만큼 UR 이행기간(1995~2004년) 이후에도 이러한 조치가 같은 맥락에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세화 유예의 지속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도 주곡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신축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주곡에 대한 관세율 설정의 배려

식량 수입국이 국내생산의 유지를 통해 식량주권의 보장과 식량안보의 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곡에 대한 관세율의 양허 수준은 다른 농산물의 경우와 견주어 유리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틀에서 주곡에 대한 관세율은 국내가격 수준이 세계가격에다 관세율을 부과한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또한 관세율의 감축 기간에 있어서도 보다 장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 3) 국내보조분야

국내보조분야에서 식량안보의 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주곡에 대한 보조조치는 모든 감축대상 보조에서 제외

주곡에 대한 보조는 생산보조, 투입재 보조, 직접지불 등 그 특성이나 구분과 상관없이 감축대상 보조(AMS)의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조수준이 크다면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sup>63)</sup> 이와 같은 보조의 상한

63) 예를 들면, 생산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식되고 있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경우에도 그 지불 규모가 크고 지속된다면 부(wealth)의 효과

은 기준연도의 보조금 규모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량안보가 달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의 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보조(또는 그 비율만큼)는 감축대상 보조로 재분류하는 방법이다.

### ② 주곡에 대한 최소허용 조치(*de minimis*)의 적용 완화

현재 품목 특정 *de minimis*의 경우 생산액의 10%(개도국 대상)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경우 *de minimis*수준을 현재 생산액 대비 10%에서 20%로 증가시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쌀의 경우, 그 시장가격 지지 수준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29.6%, 1996년에 28.3%, 1997년에 21.9%, 1998년에 16.4%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의 10%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예시한 것과 같이 이 기준이 더욱 완화될 경우에는 쌀에 대한 보조가 *de minimis*에 포함될 수도 있게 된다.

### ③ 그린박스 조치 가운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에 대한 규정의 조정

현재 그린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조치는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고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가격으로 집행할 경우 세계가격 수준과 그 차이만큼이 AMS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식량안보 목적의 주곡에 대한 재고관리는 관리가격에 기초해 운용하되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에 재고량은 적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적정 수준의 재고량은 FAO가 권장하는 소비량의 17~18% 정

---

나 위험감축 효과 등에 의해 생산이나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정 수준 이상의 재고관리 비용은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기타 협상전략과 과제

식량안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 수입국뿐만 아니라 선진 수입국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South-North)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발 박스의 핵심은 식량안보이고 식량안보는 남북 모두 해당되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개발 박스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은 개발 박스가 개도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Green and Priyadarshi 2001).

이러한 여건에서 개발 박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방식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 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개발 박스는 정책 조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 박스는 허용보조의 확대 차원에서 그린박스에 포함하는 방법, 개도국 우대조치 조항(농업협정 제6조 2항)에 넣는 방법, 다른 국내보조 관련 박스와 같이 독립적인 박스로 설정하고 허용보조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손익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 ②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의 ①과 같은 제안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1대안: 개발 박스에 선진 수입국의 식량안보 사항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제2대안: 선진 수입국의 식량안보 사항이 개발 박스 안에 통합되지 않을 경우, 개발 박스의 허용과 별도로 개도국 이외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사항을 다룰 수 있는 이른바 ‘식량안보 박스(food security box)’의 설정 주장<sup>64)</sup>

제3대안: 식량안보 박스는 독립된 국내보조 조치로 분류되거나 그린박스의 연장선에서 수용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NTC 가운데 식량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농업협상 가운데 식량안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관련 회원국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개발 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를 다루는 방식은 개도 수입국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형태의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식량안보 박스의 틀 안에서 식량안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선진 수입국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조치가 독립적인 형태로도 설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4) 인도는 개도국 입장에서 식량안보 박스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생계형 소농과 국가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작물의 생산에 대한 수단들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도국의 식량안보는 선진국의 NTC 틀 안에서 보는 식량안보와 다르다고 강조함(G/AG/NG/W102; 2001년 1월 15일).

## 2. 소규모 가족농과 관련한 조치 제안

### 가. 논리적 배경

다른 농업형태와 비교할 때 소규모 가족농(SFF)이 사회에 제공하는 NTC는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sup>65)66)</sup> 소규모 가족농과 연계된 NTC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촉진
- ②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및 서식지 제공 등 환경 서비스의 창출
- ③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
- ④ 전통문화와 가치 계승에 대한 기여

---

65) 이와 같은 주장은 소규모 가족농이 채택하는 영농방식, 의사결정, 농경지 이용 형태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환경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의 효용까지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에 기업농은 상대적으로 공공의 효용보다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66) 미국 농무부는 소규모 가족농이 지니는 공공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USDA 1998).

- ① 소유, 작물재배 체제, 경관, 생물학적 조직, 문화와 전통 등의 다양한 농가 구조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다양한 농촌경관과 열린 공간 제공 등에 대한 기여
- ② 책임 있는 천연자원의 관리를 통해 얻는 환경 이익
- ③ 분산화된 토지소유를 통해 농촌지역 거주민에게 더욱 공정한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기능
- ④ 가족을 위한 삶의 터전 제공
- ⑤ 농민시장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자도 하여금 식품과 농업, 그리고 자연에 개인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⑥ 지역경제의 기반 제공

소규모 가족농은 농정개혁과 무역자유화의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족농에 의해 제공되는 NTC의 공급이 사회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조치의 부재는 이른바 정책실패를 발생시키게 된다.

가격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 중심의 구조조정과 농정개혁, 그리고 시장 개방의 확대는 소규모 가족농의 유지 기반을 약화시킨 반면에 기업농의 진출 확대와 시장 장악력 증대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농정개혁과 UR 이후 무역자유화의 촉진은 소규모 가족농의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체제에 의한 NTC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가족농과 연관된 농가경제의 붕괴 조짐은 비단 농산물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다.

수입개방 전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수입개방 전후의 농가경제 추이 비교

연도	총 농가수 (천호)	3ha 이상 농지소유 농가 비중(%)	1ha 이하 농지소유 농가 비중(%)	다각화 지수	농가 교역조건	도농 소득 격차(%)
1989	1,772	1.6	60.8	3.4	95	98
1995	1,501	4.7	57.6	3.6	100	95
2001	1,354	5.5	61.2	3.2	84	76

자료: 농림통계연보, 농림부(2002)를 기초로 산출함.

첫째, 총 농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농가구조의 양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가규모 측면에서 3ha 이상을 소유한 농가가 총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1ha 이하의 농가 비중 또한 199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지 이용의 집약화와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았듯이, 10개 작물(그룹)에 대해 농경지 이용의 다각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각화 지수(Herfindahl index)를 산출한 결과 지수의 값이 1995년 이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가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농가 교역조건은 1995년까  
 지 개선되다가 그 이후에 크게 악화되고 있다.

끝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도농 사이의 소득 격차는 특히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가경제의 추이는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기반이 취약한 소규  
 모 가족농의 경우에 내·외적 위협 요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족농에 의해 제공되는 NTC는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 농정개혁과  
 무역자유화의 촉진과 더불어 가족농의 붕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  
 고 있다(Levins 2002). 1999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220만 농가가 있는  
 데, 농가 소득의 90% 정도가 농외소득으로 구성된다(Fluharty 2001). 1998  
 년 기준으로 연간 판매액이 25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이 전체 농  
 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이며, 소규모 가족농에 의한 생산이 총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정도로 알려져 있다(Hoppe et al.  
 2001).

#### 나.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책 조치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의 틀 안에서

접근할 수 있다. 농업협정 부속서 2에 따라 그린박스에 해당하는 보조 조치는 무역효과와 생산효과가 최소 수준이어야 하며, 정부의 공공 재정계획에 의한 지원과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그린박스 조치의 틀 안에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사항은 다음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①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의 한 구성요소로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 이 방안은 가칭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Payments for small family farms)’란 새로운 조항으로 그린박스 조치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 방안이 기존의 그린박스 규정인 제6항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나 제7항 ‘소득 안전망(Income safety net program)’ 등과 차별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표 5-2).

<표 5-2>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소득보조의 기준

수혜 대상(자격)	· 기준 기간에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또는 생산) 수준
보조 조건	·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생산량이나 생산형태와 연계되지 않음.
보조 규모	·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경영규모별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 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조규모를 설정함.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치의 수혜 대상 또는 기준은 농가 소득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농가의 소득요인이 소규모 가족농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조의 조건은 그린박스 조치의 일반 원칙에 준해서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생산량이나 생산형태(가축단위 포함)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보조의 규모는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조치와 차별된다.<sup>67)</sup>

## ② 소규모 가족농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반영

이 방안은 실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관련한 사항이 그린박스 제6항 ‘비연계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적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표 5-3). 기존의 보조 조건에서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평균 도시가계소득 수준과 연계해 소규모 가족농의 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sup>68)</sup>

〈표 5-3〉 소규모 가족농을 위한 비연계 소득 보조의 요건 조정

	기존의 기준	조정 방향
수혜 대상(자격)	기준 기간에 소득, 생산자, 생산수준 등	변함 없음
보조 조건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생산량이나 생산형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키지 않음.	변함 없음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국내 또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키지 않음.	삭제함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시키지 않음.	변함 없음
	보조의 조건으로 농산물 생산을 요구하지 않음.	삭제함
보조 규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조의 조건으로 농산물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삭제해야 하는데,

- 67)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기준 기간 이후 특정 연도의 국내외 가격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소규모 가족농과 연계된 NTC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 68) 삭제가 어려울 경우 기준 연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소규모 가족농에 의한 NTC의 공급이 농업생산과 강한 결합 생산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NTC는 농업생산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NTC와 질적인 측면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sup>69)</sup>

#### 다. 기타 협상전략과 과제

새로운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조항의 도입 또는 기존 조치의 조정 등의 방식으로 소규모 가족농과 연계된 NTC를 그린박스 조치에 반영하는 것은 일부 규정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 기존의 농업협정에 NTC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소규모 가족농의 NTC와 농업생산 사이에 나타나는 강한 결합 생산관계 등을 강조하면서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안들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차선의 접근방법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고려사항이 개도국 우대조치에 추가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

69) 소규모 가족농에 의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NTC는 농업생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NTC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이 조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서라면 농산물 생산이 보조 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말하면,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생산자는 더 이상 소규모 가족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가족농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정책조치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 3. 농촌활력(농촌개발)과 관련한 조치 제안

#### 가. 논리적 배경

농촌활력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한마디로 농촌의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전체의 인구에서 약 75%의 빈곤층이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개도국에서 농업은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개발의 경험과 역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의 성장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없다.
- ② 투입재 보조, 관개 지원 등 적절한 보조 조치를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 ③ 농업 생산성과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과 연계된 정책 조치가 유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정은 농촌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협정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 중요한 생산성이나 생산 증대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규제하고 있다. 많은 나라의 관심은 농업부문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및 다각화 등을 통한 환경 서비스의 강화에 있으며 이를 통한 고용효과, 소득증대효과 등을 통해 농촌활력을 촉진하는 데 관련정책의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다.

농업협정의 국내보조 규정은 감축대상 보조, 허용 보조 등 정책 조치의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책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원국 수준에서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의 신축성은 기준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확보할 수밖에 없다. 농업협정

가운데 특히 허용보조의 경우 지원 조건이 엄격해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농촌개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소득 안전망 조치의 한계이다. 소득 안전망 조치에 관한 규정은 평균 농업 조수입이 30% 이상 감소했을 때 그 손실분의 70% 미만 수준에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률이 낮은 품목의 경우(예: 양돈의 경우 소득률은 약 20%) 농업조수입이 30% 미만으로 감소하면 음(-)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소득안정 조치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오내원 등 2001).<sup>70)</sup>

둘째,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불의 한계이다. 기존의 조항은 조건 불리지역에서 농업생산을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소득 손실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로 하여금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러한 지원 수준은 농업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건 불리지역은 인구 감소, 소득원 제약, 취약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이나 정책 대상보다도 더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나. 농업협정에 반영하는 방안

### 1) 기본적인 접근방식

농촌활력을 위한 필요조건은 적절한 농업생산과 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생산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농촌활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 활동이나 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정책 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70) 1993-97년에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5년에 1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내원 등 2001).

의 허용보조 조치를 조정함으로써 농촌활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조치의 허용

농촌활력(개발)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조치는 허용보조로 인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활력과 관련된 조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보조 조치 등 기타 조치와 연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앞에서 논의한 대로 농촌활력은 농촌의 고용 창출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한정해 접근하는 것이 조치들 사이의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고용 창출효과와 소득효과를 위해 농가의 고용 임금에 대한 지원(일종의 투입재 보조)은 허용조치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71)</sup> 또한 농촌개발을 위한 구조조정과 하부구조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광범위하고 신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허용 조치로 인정하여야 한다.

## 3) 그린박스 조치에 대한 기준의 조정

농촌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안전망 조치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① 발동 기준의 완화

평균 농업 조수입이 30% 이상 감소할 때 발동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그 발동 기준을 완화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

71)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가족농보다는 대농에 유리하며 도덕적 해이의 발생 등 실행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정책집행시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동 기준이 15%로 설정된다면 1997~99년 자료를 평균해 산출한 소득률에 근거할 때 비육우와 육계를 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농업 조수입이 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된다(표 5-4).

② 보상 수준의 증대

농업 조수입 감소분의 70% 미만 수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현재의 기준을 감소분의 100%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품목을 다각화하지 않아 품목 사이에 소득의 상쇄효과를 피할 수 없는 농가의 경우 소득 불안정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주요 품목의 평균 소득률: 1997~99년 평균

품목		소득률(%)	품목		소득률(%)
곡류	쌀	74	과수	사과	61
	겉보리	59		배	66
	콩	72		감귤	67
		노지포도		73	
노지채소	가을무	73	축산	비육돈	19
	가을배추	75		비육우	14
	마늘	71		육계	14
	양파	72		낙농	39
시설채소	딸기(반축성)	56	기타	인삼	61
	시설상추	50			
	오이(축성)	56			

자료: 오내원 등(2001).

농촌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소득 안전망에 관한 조치 이외에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불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건불리 지역에서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의 소득 수준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안한 소규모 가족농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과 농가 소득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농가와 조건불리지역의 농가 사이의 소득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기타 협상전략과 과제

농촌활력 문제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의 구분 없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고, 입장이 같은 회원국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치가 채택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호. 1993.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8.
- 농림부. 2002. 「농림업 주요통계」.
- \_\_\_\_\_. 2002. 「농림통계연보」.
- 오내원·최경환·김태곤·오현숙. 「경영체별 소득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C200130.
- 임승수. 1999.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22권 1호: 4564.
- 임승빈. 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Brown, Lester and Hal Kane. 1994. Full House; 김성문 외 (옮김) 1997. 「풀 하우스: 인구, 식량, 환경」, World Watch Institute.
- Chung, K., L. Haddad, J. Ramakrishna and F. Riely. 1997. *Identifying the Food Insecure: The Application of Mixed Method Approaches in Ind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FAO. 1999. “Cultivating Our Futures: Taking Stock of the 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 Paper prepared for FAO/Netherlands Conference on The 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 and Land. 1217 September 1999 Maastricht, The Netherlands.
- FAO. 1996. “Food Security: Some Macroeconomic Dimension.”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1996. Rome.
- Fluharty, Charles W. 2001. The Case for Attention to Rural Entrepreneurs. <http://www.rupri.org/presentations/jeffcity061802.pdf>
- Green, Duncan and Shishir Priyadarshi. 2001. “Proposal for a ‘Development Box’ in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CAFOD Policy Paper*. (October).
- Hoppe, R.A., J. Johnson, J.E. Perry, P. Korb, J.E. Sommer, J.T. Ryan, R.C. Green, R. Durst, and J. Monke. 2001. “Structur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U.S. Farms: 2001 Family Farm Report.” *ERS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68.
- Knutson, R.D., J.B. Penn, and B.L. Flinchbaugh. 1997.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4th edition. Prentice Hall Publishing.
- Levins, Richard A. 2002. Innovative Farmers of Ohio. [http://www.ifoh.org/new\\_page\\_8.htm](http://www.ifoh.org/new_page_8.htm)
- Lim, SongSoo. 2002. “Indicators for Agricultural Landscapes and Policy Implications: A

-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in the NIJOS/OECD Workshop on Agricultural Landscape Indicators, 79 October, 2002, Oslo, Norway.
- OECD. 2001. *Multifunctionality: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Paris.
- Richardson, James W. 2000. “Can (Should) We Save the Traditional Family Farm?” Paper presented in AAEA Preconference Workshop on the Policy Issues in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Food System.
- Solagran. 2001. Deregulation and Food Security: A Negative Result. [http://www.alliance21.org/en/proposals/finals/final\\_OMCagri\\_en.pdf](http://www.alliance21.org/en/proposals/finals/final_OMCagri_en.pdf)
- Tauer, L. and T.B. Seleka. 1994. “Agricultural diversity and Cash Receipt Variability for Individual States.” *Cornell Agricultural Economics Staff Paper* No. 94-1. New York.
- USDA. 1998. *A Time to Act. USDA National Commission on Small Farms*.
- WTO.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http://www.wto.org>.

## Executive Summary

### Non-trade concerns: Strategies for the DDA negotiation on agriculture

Yoocheul Song · Jihyun Park · Jaeok Lee · Songsoo Lim

The Agriculture Agreement provides significant scope for governments to pursue important non-trade concerns such as food security, the environment, structural adjustment, rural development, poverty alleviation, and so on. Article 20 says the negotiations have to take non-trade concerns into account.

Most countries accept that agriculture is not only about producing food and fiber but also has other functions, including these non-trade objectives. Some countries say all the objectives can and should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through green box subsidies that are targeted directly at these objectives and by definition do not distort trade. Examples include food security stocks, direct payments to producers,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safety-net programs, environmental programs, and regional assistance programs that do not stimulate agricultural production or affect prices. These countries say the responsibility is on the proponents of non-trade concerns to show that the existing provisions, which were the subject of lengthy negotiations in the Uruguay Round, are inadequate for dealing with these concerns in targeted, non-trade distorting ways.

Other countries say the non-trade concerns are closely linked to production. They believe subsidies based on or related to production are needed for these

purposes. For example, rice fields have to be promoted in order to prevent soil erosion, they say.

Korea places a lot of emphasis on the need to tackle agricultures diversity as part of these non-trade concerns. The logical basis of supporting the NTC is very important issues that should be tackled.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concept of NTC and the current debate on NTC in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s. We also try to find the appropriate concept of NTC in Korea. Finally, we investigate the ways to reflect the NTC in the current agricultural negotiation in the WTO especially in the field of food security, small family farm and rural amenity.

## KIEP 발간자료 목록 (1997~2002. 12)

### ■ 정책연구

- |   |  |
|---|--|
| <p>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p> <p>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p> <p>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p> <p>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p> <p>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 金鍾範</p> <p>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李晟鳳</p> <p>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羅秀偉</p> <p>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 李昌在 外</p> <p>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p> <p>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p> <p>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p> <p>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p> <p>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濬 外</p> <p>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의 改善方案 / 趙顯坡</p> <p>98-0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Ⅱ / 張亨壽·王允鍾</p> <p>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황과  과제 / 李章揆 外</p> <p>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mp;A의 役割 / 王允鍾·金琮根</p> | <p>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p> <p>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p> <p>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p> <p>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李弘求</p> <p>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p> <p>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의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李炯根</p> <p>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의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p> <p>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李昌在·朴映坤</p> <p>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p> <p>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 / 徐錫興</p> <p>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 · Eun Mee Kim</p> <p>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元容杰</p> <p>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教</p> <p>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 金寬濬·李性美</p> <p>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p> <p>98-19 中·東歐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황과 전망 / 鄭余泉·崔秉熙·韓貞澈</p> <p>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洪翼杓</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鎭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 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 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 (IAPs) 평가 / 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①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 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②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 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金益洙
- 99-10 동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 ② / 黃祥仁·王允鍾·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③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 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④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 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 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 / 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障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 鄭仁教·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 金準東·蔡旭·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 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 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 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尹昌仁·韓宅換·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 李鍾華
-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 宋有哲·朴芝賢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
-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尚謙·朴仁元
-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金子珍
-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金鴻律
-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
-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
-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
-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 시사점 / 崔洛均 外
-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 라운드협상의 시사점 / 尹昌仁 外
-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旭·徐楊培
- 02-01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
-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
-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정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
-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를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
-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
-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偉
-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栗
-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
-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
- 02-10 미국 경수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禪
-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曹琮和
-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
-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
-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
-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栗·金玆慶
-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坡
- 02-17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哲·金鴻律
-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鎖를 중심으로 / 洪裕洙
-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

■ 조사분석

---

-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歌德
-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對한 示唆點 / 崔爌炆
-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對한 研究 / 蔡旭
-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휘발유에 對한 基準」에 對한 紛爭 / 李鎬生
-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栗
-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度 / 梁俊哲 · 金鴻律  
/ 李炯根
-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燮
-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 鄭仁敦 · 李昌在 編著
- 98-03 한국과 멕시코의 外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 조정과제 / 趙潤濟 · 金鍾燮
-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 · 李明振
-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 · 李載榮
- 98-08 APEC 주요협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鎭 · 文宇植 · 白珍玟
-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 · 韓弘烈
-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 · 徐暢培
-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 · 李晟鳳
- 99-01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 · 李炯根
-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哲 · 金鴻律
-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金元鎭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 00-05 國際協力體 設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 · 朴映坤
-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鎭
-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玟 · 尹眞那
-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 · 朴芝賢
-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 · 金鍾杰
-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殊
-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李性美
-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 · 羅秀燁

---

■ Policy Analyses

---

-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Tae-Joon Kim · Jai-Won Ryou · Yunjong Wang
-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 Sangyoung Joo · Doo Yong Yang

-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 Sunghyun H. Kim · Yunjong Wang
-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 Soyoung Kim · Sunghyun H. Kim · Yunjong Wang

---

■ Policy Papers

-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ue Lee · Jai-Won Ryou
-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 Taek-Whan Han
-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 Junsok Yang eds.
-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 Yunjong Wang · Hyoungsoo Zang

---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趙明哲
-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 李鍾華 · 李東輝 · 趙泓植
- 01-01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 Tae-jun Kim · Doo Yong Yang
-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 孫讚鉉 · 尹眞那
-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 · 羅秀樺
-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 Young-Rok Cheong ed.
- 97-02 제5차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APEC연구컨소시엄 리운드테이블 / 安炯徒 編
- 97-03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전과 동반者關係의 모색—韓·中修交 53주년 세미나 / 鄭永錄 編
- 97-04 러시아의 外國人投資環境과 韓·러關係 / 李昌在 · 金秉熙 編
-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Bak-Soo Kim ed.
-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 / 孫讚鉉 編
-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 Won-Ho Kim ed.
-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Mikyung Yun ed.
- 98-04 21세기를 향한 韓·中·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 / 李昌在 編
-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 Yung Chul Park · Yunjong Wang
-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 王允鍾 編
-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 Kyung Tae Lee ed.
-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 Chong-Wha Lee ed.
-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 Il SaKong · Yunjong Wang eds.

-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Yunjong Wang · Hyong-Kun Lee eds.
-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 Yunjong Wang eds.
-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朴月羅·崔義炫 編

---

■ APEC Study Series

---

- 00-01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 Kihoon Lee · Wankeun Oh
-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 Byung-il Choi
-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 Chulwon Kim
-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Taeho Bark and HwY-Chang Moon
-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t Choi
-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 Yoo Soo Hong
-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

■ Discussion Papers

---

-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 Junsok Yang · Mikyung Yun
-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 Yunjong Wang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 Jinna Yoon
-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 Deok Ryong Yoon
-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Working Papers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 Hyungdo Ahn
-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의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 · 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金元鎬 外
- 97-10 韓 · 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 鄭鎔株
- 98-01 韓 · 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 · 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 · 美 投資協定の 意義와 展望 / 金寬濬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June-Dong Kim ·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Chan-Hyun Sohn etc.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①: 英國 / 申東和
-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②: 인도네시아 / 金完仲
-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③: 美國 / 朴英鎭
-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④: 中國 / 金琮根
-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와 애로사항⑤: 泰國 / 權耿德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LF / Hyungdo Ahn ·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 外
-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Yoo Soo Hong
-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株
-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통관 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 · 任曉成
- 98-18 주요국의 투자지관계 관리사례 / 申東和
-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朴英鎭
-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의 示唆點 / 金元鎬 外
-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蔡 旭 · 徐暢培
-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Inkyo Cheong · Yunjong Wang
-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Inkyo Cheong
- 99-05 OECD연구시리즈③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張燿鎭
-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Yunjong Wang
-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Myung-Chul Cho · Hyoungsoo Zang
-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Hyungdo Ahn

-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 June-Dong Kim
- 99-10 OECD연구시리즈[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姜聲嶺
-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 Jae-Jung Kwon · Joo-Ha Nam
-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Sung-Yeung Kwack
-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 Jong-Bum Kim
-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Yunjong Wang
-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Chong Wha LEE
- 99-16 OECD연구시리즈[4] OECD/DAC의 공개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權 秉
-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Simonetta Verdi
-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Honggwee Lee
-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Sung-Hoon Park
-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Byung-il Choi
-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Sun G. Kim · Wankeun Oh
-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 99-24 OECD연구시리즈[5]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尹美京 · 金琮根 · 羅榮淑
-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Inkyo Cheong
-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Jae-Wan Cheong
- 99-27 OECD연구시리즈[6]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哲 · 金鴻律
-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朴映坤
-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 · Yunjong Wang
-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 Chae-Shick Chung · Yunjong Wang
-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 Hong-Youl Kim
-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Jong Bum Kim
-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Se-Jik Kim · Mark R. Stone
-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 Doo Yong Yang
-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 June-Dong Kim
-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 In-Sok Shin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 Ivailo Izvorski
-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 Sunghyun H. Kim · Yunjong Wang
-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 Rudi Dornbusch · Yung Chul Park
-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 Se-Jik Kim
-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 Yunjong Wang · Deok Ryong Yoon
-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 Jong-Wha Lee · Inkyo Cheong
-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 Chang-Kyu Lee
-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OECD 연구시리즈

-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哲 · 金鴻律
-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 · 朴芝賢
-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 자본시장 / 黃祥仁 · 李炯根
-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 01-04 프로그노시스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지역리포트

-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鎭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 통합의 전망 / 河由貞
-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 林泓修
- 02-02 일본 수급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歌德

■ 지역연구회시리즈

-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鎊
-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 · 徐煥周
- 00-05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鎭
-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浚
-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鎭
-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浚
-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 · 千寅鎭
-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 · 全載旭
-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 변화 / 朴繁洵
-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李滿基
-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李光勛
-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成源鏞
-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 라켄 유럽이 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教·許興鎭
-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彦

## 宋有哲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5)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ycsong@kiep.go.kr)

著書 및 論文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공저, 2001)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공저, 2000) 외

## 朴芝賢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3)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jh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중·일간 농산물 무역마찰과 교역 전망』 (2002)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공저, 2000) 외

## 李載玉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77)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198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現, E-mail: jaeoklee@krei.re.kr)

著書 및 論文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Modality)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공저, 2002)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방향』 (공저, 2000) 외

## 林頌洙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1989)

텍사스 A&M Univ. 농업경제학 경제학 박사(19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songsoo@krei.re.kr)

著書 및 論文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 연구』 (2001)

『WTO 쇠고기 분쟁 패널의 내용과 향후 대책』 (공저, 2000) 외

政策研究 02-02

---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2002년 12월 20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安 忠 榮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145-0 94320

값 7,000원

89-322-1072-1(세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C 주보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